밝은 얼굴, 웃는 얼굴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안전교육계획』

2023학년도

송곡초등학교

목 차

Ⅰ. 개요 ·····

1. 학교계획
2. 학교계획 추진현황
3. 학교 현황 및 조직체계
4. 안전 관련 업무

Ⅱ. 세부 추진 계획 ·····

1. 안전한 교육활동 운영
2. 학교 안전교육의 내실화
3. 학교 시설 안전 점검 · 관리 · 조치
4. 학교 안전 문화 확산
5. 안전사고 피해회복

Ⅰ. 개요

1. 학교계획

가. 학교계획의 목표

- 실효성 있는 학교계획의 수립으로 학교 구성원의 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학교 안전관리 체계 및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
- 자신의 안전과 타인과 동료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역량 배양
- 학교 안전 관리의 체계성(계획, 준비, 실행, 평가, 피드백) 확보
- 학생의 꿈과 희망을 가꾸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실현

나. 학교계획의 내용체계(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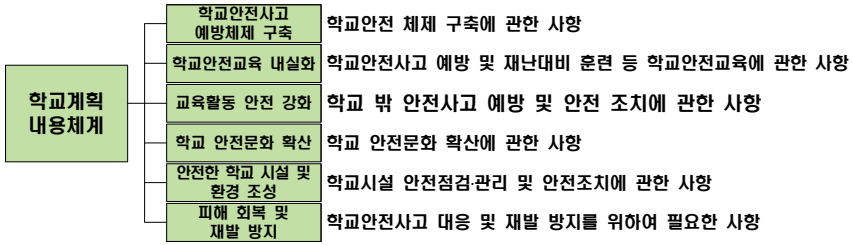

다. 학교계획의 수립·시행

○ 학교장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제6항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

2. 학교계획 추진현황

가. 학교안전교육 추진 실적

1) 교직원 안전교육 직무연수 이수 현황

(기준: 2023년 2월)

구분 / 연도		교직원 수(명)			안전관련 전문교육(15시간) 이수			
		교원	직원	계 (A)	교원	직원	계 (B)	이수율 (B /A)×100
2021.3. ~ 2024.2	2021	13	4	17	7	2	9	50
	2022	14	4	18	8	2	10	55
	2023	14	4	18				

※ 3년마다 모든 교직원이 안전교육 직무연수(15시간 이상) 이수

※ 교원은 정규교사, 기간제교사, 시간제 강사를 말함

2) 학생 및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현황

(기준: 2023년 2월)

교육대상 인원수(명)				교육실시 인원 수(명)				실시비율(%)	
학생 (A)	교직원 수			학생 (C)	교직원 수			학생 (C/A)	교직원 (D/B)
	교원	직원	소계 (B)		교원	직원	소계 (D)		
54	14	4	18	54	14	4	18	100	100

3) 안전영역별·교육과정영역별 학생안전교육 이수시간 현황 (기준 : 2022년)

교육과정영역별 이수시간 / 안전영역 (필수이수시간)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이수시간 계
	1학기	2학기	
생활안전(1)	6	6	12
교통안전(9)	6	5	11
폭력 및 신변보호(3)	4	4	8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5)	5	5	10
재난안전(5)	3	3	6
직업안전(0)	1	1	2
응급처치(1)	1	2	4
계(33)	27	26	53

나. 전년도 학교계획 추진실적

기본계획 각호	법제도	세부점검내용	계획수립[1] ○	계획수립[1] ×	전년도 실적[2] ○	전년도 실적[2] △	전년도 실적[2] ×	추진실적 세부내용[3]
1.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기본계획, 지역계획, 학교계획	학교계획 수립 시 안전담당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였는가?	✔		✔			·등하교 시 교통안전 학생, 학부모 대상 지도
		학교계획에서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교직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명확히 기술하였는가?	✔		✔			
		학교안전계획의 취지와 목표를 학교실정에 맞게 적절히 설정하였는가?	✔		✔			
		우리 학교는 학교와 주변지역의 위험성을 파악한 후, 이에 적합한 학교안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학교안전계획 교직원 연수 실시
		학교안전계획은 교직원들 간에 명확히 공유되었는가?	✔		✔			
		안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시간, 정보, 인원, 예산 등)과 수행 절차는 파악되었는가?	✔		✔			
2. 교육활동 운영의 기본지침	학사일정별 학교안전	학사일정별 연간 안전관리계획은 각 계절별 재난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		✔			·매월 시설점검 및 학생체험중심 안전 교육 실시
		체험과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을 계획하였는가?	✔		✔			
		안전학습 관련 컨텐츠는 적절하고 풍부하게 준비하였는가?	✔		✔			
		시기, 활동, 행사별로 발생하기 쉬운 사고나 취약 학생 혹은 구역을 파악하여 예방조치를 할 계획을 세웠는가?	✔		✔			·소방서와 합동 소방교육 실시
	외부체험활동 안전	현장체험학습 계획 시 현장체험학습 지침 <별첨5>의 사항들을 교사들에게 공지하고, 계획에 게재하였는가?	✔		✔			
	학교주변 안전관리	학교안전의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지자체, 소방서, 경찰서등) 간 협력 계획이 마련되었는가?	✔		✔			
		스쿨존 정비 방법은 마련되었는가?	✔		✔			
	안전약자 안전대책	요양호자(안전약자)를 파악하고, 안전약자 안전대책 <별첨3>에 따를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		✔			
3. 학교안전교육	예방 및 학교안전교육	안전교육 연간 계획표에서 학교와 학교 주변에 존재하는 위험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교육계획에 포함시켰는가?	✔		✔			·안전교육 교사연수 진행

기본계획 각호	법제도	세부점검내용	계획수립[1] ○	계획수립[1] ×	전년도 실적[2] ○	전년도 실적[2] △	전년도 실적[2] ×	추진실적 세부내용[3]
		안전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배려도 교육에 포함 시켰는가?	✔		✔			
		학생 참여형 안전교육을 준비했는가?	✔		✔			
		안전교육 교사연수 연간계획은 준비 되었는가?	✔		✔			
		안전사고 유형별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			
		교과 연계 방법이 수립되었는가?	✔		✔			
		안전 전문가 초빙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	·안전훈련 이 체험형·토의형으로 실행
	정기훈련	학교구성원 모두 체험할 수 있는 훈련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연수 실시
		훈련은 구체적 목표 및 평가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		✔			
		훈련은 체험형·토의형으로 수립하였는가?	✔		✔			
		학교에서 일어날 위험이 높은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재난대비훈련을 계획했는가?	✔		✔			
		심폐소생술의 이론과 방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			
		안전약자를 포함한 훈련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4. 학교시설 안전점검관리 및 안전조치	매월 안전점검의 날(제8조)	매월 안전점검의 날 <별첨10>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매월 안전점검의 날 실시
	안전관리(제7조)실시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별첨11>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점검을 계획·실시하였는가?	✔		✔			
	CCTV 관리	CCTV 관리 업무 분장은 명확한가?	✔		✔			
5. 학교안전문화 확산		안전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기록하고 자료를 기록해서 공유하며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			
		각종 안전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공유·적용하고, 자주 사용하는 자료는 정기적으로 갱신, 정비하여 손쉽게 찾아 쓸 수 있게 준비하였는가?	✔		✔			
		학교 구성원의 안전 관련 행동, 실천, 태도 등에 대해 인정과 격려를 해 줄 수 있는 학교 풍토가 조성되어 있는가?	✔		✔			
		학교안전은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확보될 수 있다는 가치관 확산을 위한 홍보·협업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안전관리활동에 따른 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방안을 마련했는가?	✔		✔			
		학교구성원이 학교안전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했을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가?	✔		✔			
6. 기타 사항		재난과 학교안전사고의 보고와 보상에 관한 절차와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마련해 놓았는가?	✔		✔			

주) 1. 계획 수립 : ○ - 반영, × - 미반영
2. 전년도 실적 : ○ - 잘 추진했음, △ - 보통이다. × - 보통이하로 추진
3. 기본계획 각 호별로 전년도 해당학교의 주요 학교안전 추진 실적을 기재

다. 안전대책 단계

Ⅰ. 학교 현황	Ⅱ. 예방 활동	Ⅲ. 대비활동	Ⅳ. 대응절차와 행동수칙	Ⅴ. 복구 활동
▪ 학년도(학기) 수업일람표 작성 ▪ 교직원 명단과 비상연락처확보 ▪ 학교위치도마련 ▪ 교육청 재난대응체계 및 비상연락망 구축 ▪ 지역재난대응 및 응급구조기관 비상연락망구축 ▪ 시설관리 및 물품공급업체 비상연락구축 ▪ 비상시 사고지휘체계 구축 ▪ 비상경보발령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구축 ▪ 비상시 교직원 일반 책무 정립 ▪ 심폐소생술, 응급구조 등 교직원의 위기대응 전문 기술 보유 ▪ 학생보호인력(자원봉사자 포함) 배치 및 근무	▪ 학교 및 건물 출입지점 안전관리 방침과 절차 적용 ▪ 방문객의 학교출입 방침과 절차 적용 ▪ 물품(택배, 식음료 및 자재) 수령 방침과 절차 적용 ▪ 통학안전 지도 및 관리 (스쿨버스, 차량 및 보행 등하교생 파악됨) ▪ 마스터키(비상열쇠)관리 ▪ 교내 차량통행 및 주차 관리 실시 ▪ 보관구역(식료품, 유해(위험/화학)물질, 장비, 약품 등) 관리 실시 ▪ 교무실과 각 교실 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 ▪ 비상탈출구, 2차탈출구(창문) 안전관리 실시 ▪ 방과 전후 교실 운영 및 안전관리 실시 ▪ 돌봄교실 운영 및 안전관리 ▪ 외부인에 대한 시설 개방 현황 및 안전관리 실시 ▪ 보건실 치료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실시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청구관리 ▪ 위험성 진단 결과 및 개선 방안 적용 ▪ 안전한 학교풍토의 조성 ▪ 안전교육 지속 실시	▪ 재난대응훈련 계획의 수립/배포와 실제 훈련 실시 (연2회) ▪ 비상 배낭 마련과 관리 ※관련 도면 (건물배치도,건물(층별)평면도, 비상시설 및 용품의 위치표시)	▪ 비상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 (재난대응 기관, 교육청,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 장애학생 지원 ▪ 대피/역대피/대피소 지정 ▪ 아래 상황 발생시 대응절차 확립 -락다운 -Drop-Cover-Hold -폭염 -황사 -태풍·집중호우 -대설 -식중독 -실험·실습실 사고 -화재 -지진·해일 -흉기난동 -무단침입/인질극 -폭발사고 -폭파위협 -체험학습활동 사고 -위험(화학)물질유출사고 -응급의료 실시	▪ 외상 후 스트레스의 모니터링과 상담서비스 제공 ▪ 시설 복구 체계구축 ▪ 피해보상 청구 절차 구축

라. 2022학년도 학교안전계획 평가 결과 및 대책 반영

2022학년도 학교안전계획 평가 결과	대책 반영
-안전관련 과제추진 업무분장 및 각 역할 수행 양호 -비상경보발령에 따른 대피 훈련 실시 -비상시 교직원, 학생, 학부모 책무 및 역할교육 실시 -매월 안전점검, 예방 활동 실시	-학교현황 및 비상연락망 최신화 -대피도 교정 후 게시

마. SWOT 분석

【 강 점 】	【 약 점 】
○ 학생 생존을 위한 안전교육 필요성 교육공동체 공감대 형성 ○ 다양한 안전교육 및 안전체험 훈련 실시 ○ 배움터지킴이 등교 및 하교 교통지도 실시	○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안전감수성 부족 ○ 계절별로 학교 내 녹지의 독충(말벌 등) 및 뱀 출몰 ○ 운동장 등 외부인의 출입에 따른 위험요소
【 기 회 】	【 위 협 】
○ 학생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의식 향상	○ 학교 주변을 통행하는 낯선 인원 및 다수 차량의 잦은 통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의 위험요소 산재

바. 4대 분야 과제별 추진 내용

4대 분야	10대 추진 과제 및 추진 내용	비고
1. 학교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1-1. 재난·안전 위기대응 체계 구축** 가. 재난 상황모니터링 및 정보공유체제 개선	안전담당
	1-2. 학교안전 관련조직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가. 학교 안전사고 예방·대책 관련 조직 일원화 나. 지역사회와 안전협력 체계 구축	안전담당 행정실
	1-3. 학교 및 학교주변 안전시스템 구축 가. 학교안전계획의 수립과 시행 나. 학교안전 위험성 진단 실시	안전담당 행정실
2. 학생 안전교육과 교직원 안전연수 내실화	**2-1. 현장중심 학생 안전교육 강화** 가. 지진대피 훈련 및 안전교육 강화 ①지진대피 2시간, 화재대비 2시간 ②7대 안전교육 표준안에 따른 51시간 안전교육 나. 수상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① 3학년 전체, 연간 10시간 이상(생존수영4시간) 이상 운영 다.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라. 실습·실습 교육 시 안전사고 예방 강화 ① 실습실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운영 마. 생활 속 안전위험 분야 예방교육 강화 ① 폭염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 ②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 안전 확보 ③ 과학실 관리체계 및 안전관리 강화(5분 안전교육) ④ 자외선, 대기질(황사,미세먼지) 담당자 지정	안전담당 각 학년 3학년 담당 교무부 정보 보건 체육 안전담당 보건
	2-2. 체험위주 안전사고 예방능력 강화 가. 맞춤형 재난대응 안전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안전담당
	2-3. 학교 구성원 안전 역량 강화 가. 모든 교직원 안전교육 직무연수 실시, 교육활동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나. 교직원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강화	연구부 보건 안전담당
3.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	**3-1. 교육시설의 안전성 강화** 가. 교육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 ①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안전점검 실시 나.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운영	교육안전부, 행정실
	3-2 교육활동 안전 강화 및 지원여건 마련 가. 안전한 체험학습의 제도적 정착 나. 진로체험 활동 안전관리 강화 다. 야외 수련활동 안전관리 강화 라.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 강화 마. 학교급식 및 돌봄교실1,2 안전관리 강화 바. 정서행동특성 검사에 따른 관심군 관리 강화 사. 학교안전사고 예방 심리적 치료체계 강화	교무부 안전담당 돌봄 책임 교사 보건 안전담당
4. 안전한 학교풍토 조성	**4-1. 학교안전 문화의 확산** 가. 나침반 5분 안전교육으로 안전교육 활성화 나. '학교 안전주간'운영으로 안전 문화 조성 - 안전주간운영 5월(재난대응훈련주간과 일원화)	안전담당 행정실
	4-2. 안전사고 평가와 환류체계 구축 가. 안전사고 처리 후 평가활동 강화	보건 안전담당

3. 학교 현황 및 조직체계

가. 학교현황

1) 일반현황

학교명	송곡초등학교		설립 구분	공립
주 소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1054			
전 화	031)632-3118	FAX	031)633-4495	홈페이지 www.songkok.es.kr
교 장	이영란		학교안전책임관	백상현

2) 학생 및 교직원 현황(2023년 2월 기준: 추후변경)

학생 (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합계	특수학급
	5	9	12	4	11	5	46	4

교직원 (명)	교원	행정직원	급식업무직원	학생보호인력	기타	합계
	14	4	2	1	3	24

3) 학교비상연락망(별도보관)

: 교직원 비상연락망, 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 (교무실 비치)

4) 학교 위치 및 비상대피도

< 주 요 교 실 위 치 >
*교무실: 1층 중앙
*행정실: 교무실 맞은편
*보건실: 2층 중앙
*당직실: 1층 교사실 옆

< 긴급 차량 접근 경로 >
대형차량 접근 경로

< 출 입 지 점 개 요 >
*정문: 주출입구로 차량 및 도보 출입구
*후문1: 차량출입구, 안전한 도보 환경이 안됨.

* 화재 , 지진발생시 재난 대피석 : 운동장 가운데 * 민방공훈련시 : 1층 중앙현관 앞

나. 학교 안전 조직

1) 안전관리추진 조직

☐ **평상시**

○ 평상시의 안전관리체계는 학교안전업무 구성요소인 안전교육, 생활지도, 안전점검, 비상훈련, 응급구조 등으로 업무를 세분화시켜 조직을 구성하며, 부장 직제에 따라 안전 업무를 분담한다.

☐ **유사시**

○ 재난 또는 사고를 대비한 유사시 안전관리체계는 평상시의 안전관리체계와 연속성을 지니되,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2) 학교 재난대응 및 구성, 운영 [사고현장 지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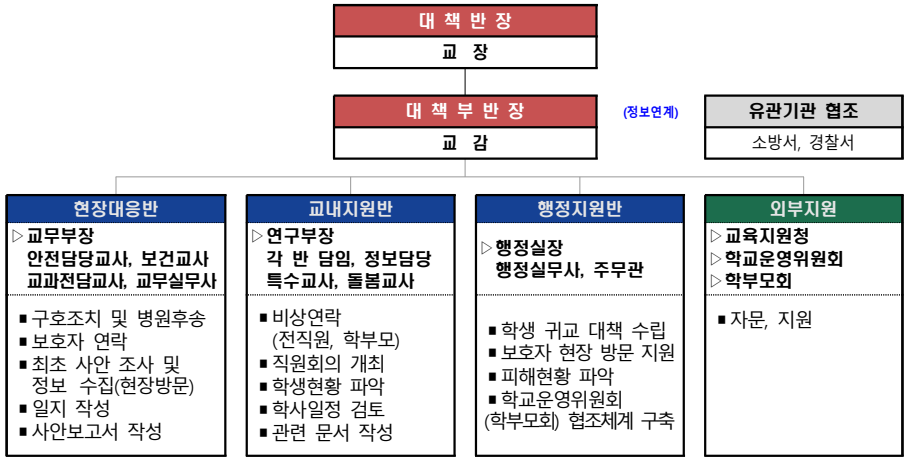

3) 비상시 대응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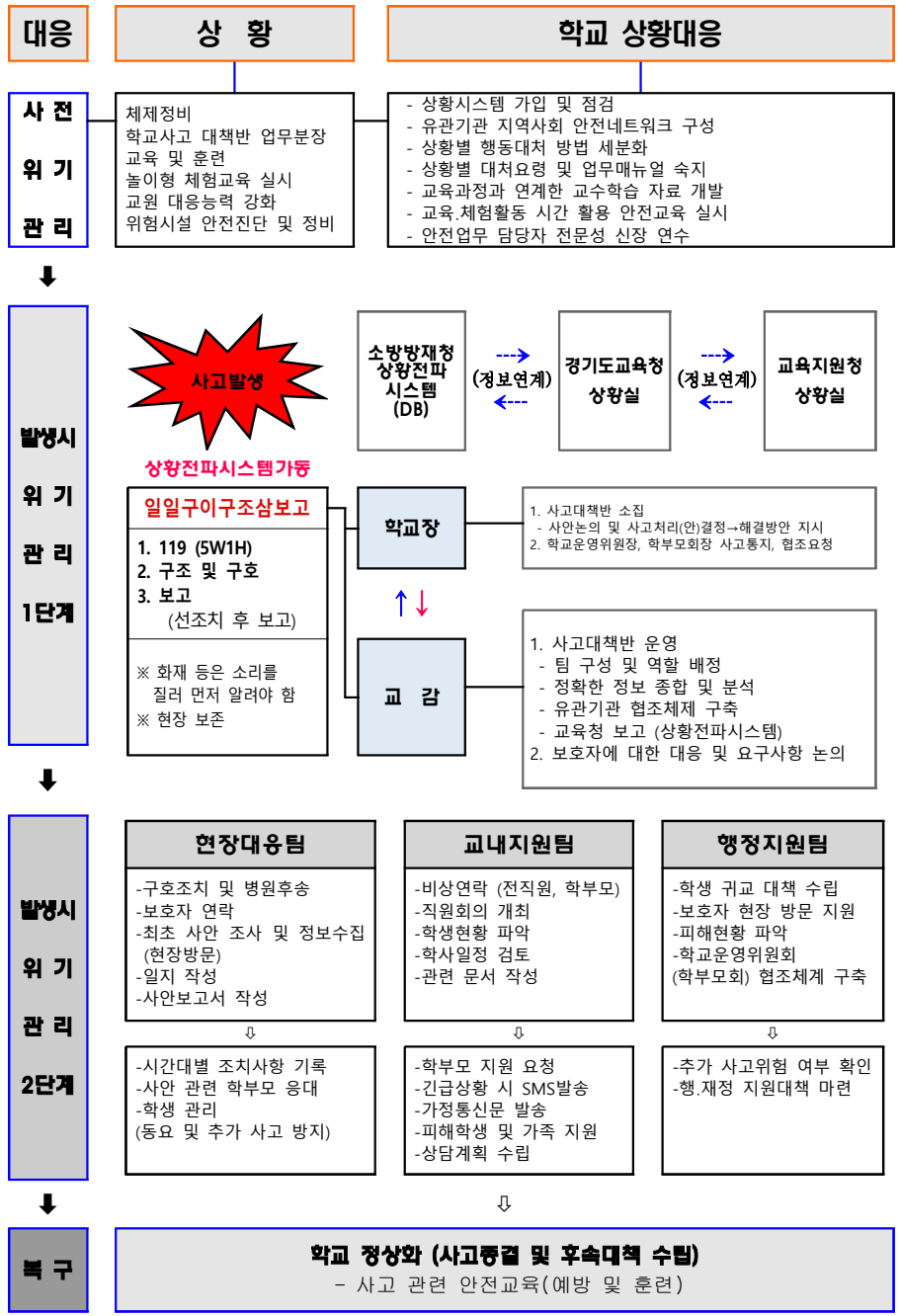

4) 학교식중독 교내대책반의 구성.운영

○ 대책반의 주요 임무는 학교식중독 발생 시 학사대책, 환자이송, 행·재정지원, 역학조사·대외협력, 환자파악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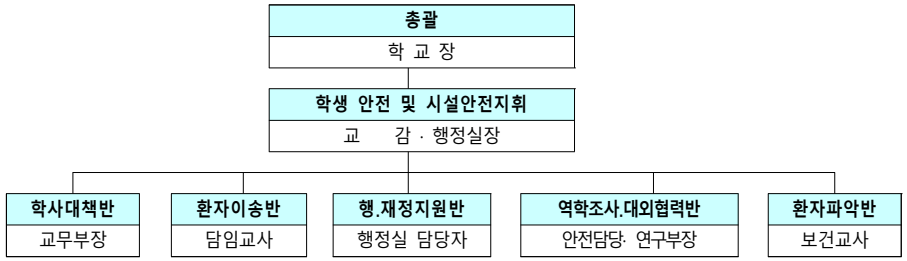

5) 응급구조체계 조직

○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사고의 경우, 시의적절한 응급구조는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일상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관건이다.

- 응급처치담당, 후송담당, 행정지원 및 유관기관 협조 등으로 조직을 편성한다.

6) 유관기관 협조체계

❍ 관련 관공서

구분	기관명	연락처	협조 및 지원사항
관공서 등	경기도교육청	031-820-0790~3	
	이천교육지원청	031-639-5616	
	모가 119지역대	031-645-5517	▪화재진압 및 예방활동 ▪현장지휘소 설치 및 긴급구조, 구난활동
	대월 119소방서	031-645-5511	
	모가 파출소	031-632-3112	▪인력 및 장비지원 ▪현장통제 및 경비 ▪현장 주변 교통 통제 ▪사고원인 규명
	이천 경찰서	182	

❍ 인근 의료기관

병, 의원	전화번호	이송소요시간(자동차 이용)	구급차 여부	비고
이천의료원	639-4888	37분	○	건강검진기관

❍ 교육청 업무 협약 및 협력체계 현황

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 주요 업무협약 현황>

교통안전

· 한국도로공사 - 교통안전 교육 전담강사 파견 교육 실시, 각종 교통안전 교육자료 보급
- 교통안전교육 견학시설 지원 등

· 경기도, 경기지방경찰청 등 18개 기관 : 교통안전문화 관련 상호 협력

가스안전

· 한국가스안전공사 - 가스안전 체험프로그램 지원, 가스안전교육 실시(강의, 영상물) 등

모바일상담

· 사단법인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 #1388청소년모바일상담을 통한 상담채널의 다양화, 청소년 근로지원 교육 실시

정신건강

· 한림대학교자살과학생정신건강연구소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공유를 통한 위기학생 상담 및 치료
- 학생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 자살, 자해(자살시도)학생에 대한 정보제공과 공동연구

학교폭력

· 의정부지방법원 - 소년보호사건 교육적 선도 활성화, 학교폭력예방 및 소년통고제 활성화

· 경기도 및 의정부지방검찰청 - 4대악 근절, 학교폭력예방 계도 활동 및 성폭력 예방과 근절 활동 협력

시설안전

· 한국시설안전공단 : 시설 관리자 교육 강사파견, 기술자료 제공, 관련 프로그램 협력

7) 비상경보 발령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구분	주 수단	보조 수단	정전시 수단	비고
접수(외부)	재난위험경보 사이렌	유선	가두 방송	
전파(내부)	학교 내 방송	음성 방송, 타종, 호루라기	타종, 메가폰, 육성, 호루라기	교무실

상황	담당	커뮤니케이션 방법	비고
비상벨 정상 작동 시설 유지 및 관리	행정실	○ 오작동으로 비상벨이 울리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한다. ○ 오작동 및 안전 관련 상황이 아닌 상태로 경보가 울렸을 때 확인 및 조치	
비상벨 경보 시	교무부장	○ 비상벨 작동 원인 및 장소 파악 및 현재 상황 보고 및 대처 (통보순서: 교무부장→교감→119 및 관할소방서, 각 실 책임자 및 담임)	
	초기상황 발견자	○ 최초의 화재목격자가 큰소리로 화재사실을 알리고, 교무실에 통보.	
	교무실 실무사	○ 방송으로 학생들에게 화재를 알리고 차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방송 제반 상황 준비	
	교무부장	○ 방송으로 학생들에게 화재를 알리고 차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명령 지휘 및 실시합니다. (안전 대피 훈련과 동일하게 대응함)	

8) 학생보호인력 배치 및 활동 현황

구분	이름(단체명)	연락처(대표자명)	비고(활동내역)
배움터지킴이	임 0 0	010-	교통지도, 출입자 관리
야간당직근무	이 0 0	010-	야간, 휴일 출입자 관리 및 순찰

4. 안전 관련 업무

○ 학교안전 관련 업무는 학교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직원이 협력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 추진

○ 업무 분장 시 부서간, 교직원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지정 권고

직 책		임 무	비 고
최 초 발견자		- **일일구 이구조 삼보고**(5W1H, 행정안전부 상황전파시스템 가동) - 사고현장 보존(사진 및 동영상, 가림막 설치 등)	5W1H 는 육하원칙을 의미
대책 반장	학교장	- 사고대책반 소집 및 회의주재 - 사안논의 및 사고처리안 결정 → 해결방안 지시 -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사고 통지 및 협조 요청 - 사안처리에 대한 보호자 불신해소 대책 강구	
대책 부반장	교감 (안전책임관)	- 학교장 부재 시 업무 대리 (현장사고 대책 총괄) - 상황실 운영(전용 전화번호 및 기록자 2인 지정) - 팀 구성 및 역할 배정 - 정보종합 및 분석(언론 일원화: 언론, 학부모, 시민단체 등) - 팀별 사안 처리 진행상황 확인(체크리스트 검토) - 유관기관 협조 의뢰 - 보호자에 대한 대응 및 요구사항 논의	*사고지휘소 :교무실
현장 대응팀	교무부장	- 현장대응팀장(담당자별 세부역할 지시) - 교감 부재 시 업무대리(현장사고 대책 총괄) - 학년 피해 상황 종합 - 사안 관련 학부모 응대 및 의견수렴 - 학년 관리(학생 동요 및 추가 사고 방지 대책 수립)	
	안전담당교사 (안전부장)	- 사고현장 이동 및 상황파악, 정보수집, 시간대별 상황 보고 - 최초 사안 조사 및 사안보고서 작성	
	교과전담교사	- 피해상황 종합 - 피해학생 후송병원별 학생인원 파악 - 현장대응팀의 보조 지원	
	보건교사	- 응급조치 및 의료자문 -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처리(피해 학생 및 교직원 등 보상)	
	교무실무사	-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현장대응팀 일지 작성)	
교내 지원팀	연구부장	- 교내지원팀장(담당자별 세부역할 지시) - 직원회의 개최, 비상연락(전직원, 학부모) - 학사일정 검토	
	정보담당교사	- 관련 문서 작성	
	학급담임	- 학생 현황 파악 - 피해학생 및 가족 지원	
		- 사안관련 학생 정보제공(상담기록, 교우관계 등) - 보호자 연락 - 학급 학생의 심리적 안정 및 교실 정상화 노력	
	특수교사	- 상황실 전화응대 -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현황판 및 체크리스트, 교내지원팀 일지 작성)	
	돌봄교사	- 교내지원팀의 보조 지원	*협조 요청 시
행정 지원팀	행정실장	- 학생 귀교 대책(이동수단 확보)수립 - 현장이동 지원 및 인적.물적 지원 - 추가 사고 위험 여부 확인 - 행.재정 지원	행정실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시행
	행정 실무사	- 교육시설공제회 업무 처리(재산 및 시설) - 행정지원팀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 및 일지작성	
	행정실주무관	- 물적 피해 현황 파악	
	기타 직원들	- 행정지원팀 보조 지원	
외부 지원팀	협력지원단체 (교육지원청)	- 전문 외부기관 고유 역할 진행	
	학교운영회 위원장, 학부모회장	- 사안 처리에 대한 학교 협조(유언비어 확산 방지) - 사안 관련 학부모 중재 - 학부모 봉사단 조직 및 운영	*학부모회 담당자 협조

Ⅱ. 세부 추진 계획

1. 안전한 교육활동 운영

가. 교육활동 안전 대책

1) 학사일정별 안전관리 연간 계획(2023 교육과정 수립 후 보완 예정)

구분	학사일정		안전교육 (학교사고예보활용)	재난대비 비상훈련	시설관리
	교내	교외			
3월	입학식, 개학식 학교안전계획 작성 전교임원선거 학급임원선거		교내 생활 안전교육 신학기 교통안전교육 학교안전계획 교직원 연수 체험활동 안전사고 예방 교육	연간 훈련계획 설명회	매월 안전점검의 날 학교시설 안전점검
4월	진로탐색 독도사랑교육 학교 안전 주간 과학 축제 장애 공감 교육 생태 체험 학습 친구 사랑의 날 인권 교육 어린이날 체육대회 가정폭력예방교육	생존수영 체험학습(3학년)	화재 및 실험실습 안전교육	황사·미세먼지 훈련 체험학습활동 안전사고 예방 교육	매월 안전점검의 날 학교시설 안전점검
5월	학생건강 체력평가 학부모 공개수업 숲 체험교실1		교내외 안전사고 예방지도 창의안전캠프	학교 자체 화재대피훈련	매월 안전점검의 날 학교시설 안전점검
6월	나라사랑교육주간 스마트폰 이별주간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학교안 주제 체험학습1 흡연 예방 교육	영어마을 체험학습(5학년)	수상 안전 예방 지도 체험학습활동 안전교육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매월 안전점검의 날 학교시설 안전점검
7월	학교안 주제체험학습2 전교임원선거 인구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여름방학		폭염 관련 예방 지도		매월 안전점검의 날 학교시설 안전점검
8월	개학식		물놀이 및 식중독 예방지도		매월 안전점검의 날 학교시설 안전점검
9월	친구사랑/욕설없는 주간 친구사랑의 날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개학기 교통안전교육 화재 및 지진 안전교육 합동소방훈련	체험학습활동 안전사고 예방 교육,	매월 안전점검의 날 학교시설 안전점검
10월	소리울 축제 생태 체험 학습 독서증진교육주간 숲 체험교실2 두드림 축제 장애 공감 교육	학교밖 주제체험학습	등산 및 야외활동 안전교육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화재 등 현장훈련 2회 포함) _소방서 연계	매월 안전점검의 날 학교시설 안전점검
11월	흡연 예방 교육 영양식생활 교육		화재 예방 지도 강화 미세먼지 교육		매월 안전점검의 날 학교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고
12월	진로탐색		겨울철 관련 안전교육		매월 안전점검의 날
1월	졸업식, 종업식		졸업식 전후 교내·외 안전교육		매월 안전점검의 날

○ 학사 일정 및 내용은 학교 사정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교직원들은 학사일정별 안전관리에 있어 부여된 역할에 따라 적극 협력하여 안전업무 추진

2) 학생 생활 안전 지도

가) 교내안전

(1) 수업시간

수업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통해 안전하면서도 즐거운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교사의 준비 및 지도사항과 학생들이 준수해야할 안전수칙을 정리하였다.

(가) 과학시간

화학약품, 위험물질 사용에 대한 취급방법과 안전수칙과 알콜램프 등 가열기구 이용 시 주의 사항을 숙지토록 한다.

① 교사 안전조치

과학담당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고 실험용기, 시약 등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파악해 둔다. 실험실습 전 충분히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해 놓는다. 독성이 있거나 냄새가 좋지 않은 기체가 발생하는 실험은 후드가 있는 곳에서 하도록 하고, 후드가 없을 때는 창문을 열어놓는다.

② 학생 안전수칙

<시약류 취급>

실험실 기기의 작업 및 조작은 지정된 순서를 정확히 따라서 하고, 취급할 약품의 사용법과 예방책을 교사가 설명할 때까지 약품에 손대지 않는다. 약품을 사용한 후에는 제자리에 보관하고 남은 것을 다시 시약병에 넣지 않는다. 다만 많은 양을 사용하는 아세톤, 에탄올, 황산, 염산, 수산화나트륨용액, 과산화수소 용액 등은 회수하여 재사용 할 수 있다.

가연성 물질을 다룰 때는 화기를 주변에 놓지 않는다. 눈금이 새겨진 유리 기구(눈금 실린더, 뷰렛, 피펫 등)는 절대로 불로 가열해서는 안 된다. 시험관에 화학물질을 가열할 때는 마개를 열고 입구가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몸을 향하지 않도록 한다. 시약을 덜어낼 때는 시약의 이름을 확인한 후 깨끗한 용기에 필요한 양 만큼 덜어낸다.

지시가 없는 한, 약품의 맛을 보아서는 안 되고, 냄새를 알고자 할 때는 얼굴을 향하여 손으로 부채질하면서 냄새를 맡아야 한다. 강산이나 강염기를 희석시킬 때는 반드시 물을 먼저 붓고 산이나 염기를 조금씩 부어가며 희석시킨다. 시약병을 실험실내에서 들고 다니지 않고 시약병이 비치된 실험대에 가서 적당량을 받아 써야 한다. 유독휘발성 액체시약은 스포이트로 옮긴다.

<가열기구 실험>

물질이 휘발성일 때는 마개를 단단히 하여 통풍이 잘되는 곳에 놓아둔다. 인화성이 큰 물질은 불 가까이에 두지 않는다.

알코올램프 안의 알코올의 양은 30~80% 정도로 담아 쓰고, 알코올램프 불을 기울여 알코올램프에 불을 붙이는 일이 없도록 한다. 알코올 램프는 입으로 불어서 끄지 않고, 뚜껑을 옆에서 살며시 덮어 끈다. 잠시 후 뚜껑을 살짝 열었다가 다시 잘 덮는다.

(나) 실습시간

가열 또는 전열기구, 칼 또는 날카로운 기구 사용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지도한다.

① 교사 안전조치

안전수칙을 충분히 지도하고 중요한 내용은 써서 보기 좋은 위치에 부착해 놓고, 준비된 식품재료의 안전성을 확인한다.

가스 불을 켜기 전에 가스가 새는지(냄새)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시킨다. 칼날이 무뎌지면 힘을 주게 되어 다칠 염려가 있으므로 적당하게 갈아졌는지 미리 확인한다.

② 학생 안전수칙

<가열기구 다루기>

가스기구의 불을 켜는 순간 불이 붙었는지 확인하며, 가스기구 주위에는 인화물질을 가까이에 놓지 않는다. 가스를 다 쓴 후에는 점화 스위치는 물론 중간밸브도 잠근다.

조리 시에는 국물이 넘쳐 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지켜본다. 냄비를 가열 할 때, 냄비 뚜껑 및 손잡이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한다.

<부엌칼, 과일칼 다루기>

재료를 썰 때는 재료를 잡고 있는 손을 칼의 뒤쪽에 놓아 베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칼날은 아래쪽을 향하게 한다.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절대 칼을 들고 장난하지 않는다.

(다) 체육활동 안전사고 예방 교육

체육수업 전에 미리 파악하고 조치할 사항과 수업시간에 지켜야 할 일을 숙지하여 지도한다.

① 교사 안전조치

요양호자, 신체허약자, 심장질환자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견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하여는 수업 전후에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충분히 한다. 정확한 운동방법과 주의사항을 완전히 숙지시킨 후 운동을 실시하고, 단계별, 수준별로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운동 중에는 운동을 하고 있는 학생 뿐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의 행동도 수시로 관찰한다. 경쟁이 과열되면 과도한 신체접촉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분위기를 적절하게 통제한다.

② 학생 안전수칙

체육시간에 몸이 아프면 미리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쉰다. 개인 운동기구는 반드시 한 사람씩 이용토록 하고 체육기구 운반은 여러 학생들이 협동하여 조심스럽게 한다. 다른 친구들의 활동 모습과 내용을 열심히 보고 익히며, 경기규칙과 질서를 잘 지키고 승부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한다.

(라) '나침반 5분 안전교육', 대피훈련 등을 통한 안전의 생활화

① 주5회 조·종례시간 및 자투리시간을 활용 5분 안전교육 실시로 학생생활 속 안전의식 체화

* 나침반 (나를 지키고/ 침착하게 대처하려면/ 반드시 익혀야 하는 5분 안전교육)

- 나침반 동영상 자료, 계기교육 자료 등 활용
- 수업 속 반복적 학습으로 인식개선 및 위기대응 방법 완벽 숙지, 재난대응 역량 강화

②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피훈련 실시

- 안전점검의 날,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등을 활용한 실질적 훈련 실시
- 훈련 시나리오 작성, 대피장소 사전 지정· 숙지 **(본교 대피장소: 1층 중앙현관 앞 또는 운동장)**

(2) 휴식시간

쉬는 시간은 교사의 임장이 약해지는 반면 학생들은 긴장이 완화되면서 신체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간대이므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설물 점검

과 확인 및 학생들의 생활태도 등에 대한 교육방법 등을 숙지한다.

(가) 교실, 복도, 계단, 난간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실, 복도, 계단, 난간에 대한 시설점검과 이용방법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① 교사 안전조치

계단, 복도 등 비상구, 비상 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에 '비상'이라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계단 난간의 높이는 90cm이상이 되는지 확인한다. 난간은 계단참을 포함하여 각층의 계단 전체에 걸쳐서 설치하고 높이가 3.7m를 초과하여 설치하여서는 안 되며, 중간에 계단참은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1cm이상 되도록 하고 불균형 계단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복도와 계단 등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통로바닥이 물기 등의 액체 이물질로 젖어 있지 않은지 수시로 관찰하여 물기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토록 한다.

② 학생 안전수칙

반드시 우측통행을 하고, 두 세 개의 계단을 한꺼번에 오르고 계단 난간을 넘거나 타고 내려오는 등의 위험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한다. 계단 및 복도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한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난간을 잡고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여러 사람이 함께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앞사람과 닿지 않도록 간격을 두고 움직여야 한다.

교실이나 복도에서 공놀이나 술래잡기 놀이를 하지 않는다. 칼, 가위 등 위험한 물건으로 장난치거나 뾰족한 연필 등으로 장난을 치면 다치기 쉬우므로 조심한다. 끈이나 줄로 목을 잡아당기는 장난은 위험하므로 하지 않도록 하고, 친구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지 않는다.

(나) 세면장, 급수대, 화장실

세면장, 급수대, 화장실 이용 방법에 대해 안전지도를 한다.

① 교사 안전조치

세균에 따라 일반적인 손 세척으로는 쉽게 제거되지 않는 세균도 있다. 따라서 위생적인 손 씻기를 위해 올바른 손 씻기 6단계 방법을 익히게 지도한다.

세면장, 급수대, 화장실은 물기가 많은 곳이므로 이용에 항상 주의토로 하고, 수시로 바닥상태를 점검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 학생 안전수칙

비누를 사용하여 손을 씻으면 세균, 먼지를 씻어내 주어 전염병의 70%를 예방할 수 있다. 세면장, 급수대,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한 줄로 서서 이용한다. 화장실 사용 후에 물을 반드시 내린다.

바닥에 물기가 있는 경우 낙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항상 바닥상태에 주의토록 하고, 세면대 위에 올라가서 발을 닦으면 세면대가 파손되어 크게 다칠 수 있으므로 절대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다) 승강기

승강기 안전진단과 올바른 탑승 지도를 실시한다.

① 교사 안전조치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승강기 탑승 수칙을 지도한다.

② 학생 안전수칙

승강기는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승강기 문에 기대거나 강제로 열지 않도록 한다. 승강기 안에서 뛰거나 장난치지 않는으며, 버튼이나 스위치를 장난으로 난폭하게 다루면 안 된다. 승강기 안에 쓰레기를 버리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승강기에 이상이 생기면 외부에 연락하고 승강기 안에서 조용히 기다린다. 승강기를 타거나 내릴 때 승강기가 정지하면 즉시 행동하지 않고 잠시 동안 내부나 외부를 살핀 후 행동한다.
화재 시에는 절대로 승강기를 타지 않고 비상계단을 이용한다. 사용중지, 고장 또는 점검중이라는 표시가 붙은 승강기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3) 점심시간

점심식사 준비와 배식, 식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사고 유형을 파악하고 사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① 교사 안전조치

평소에 예절교육과 함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배식차 운반 요령 및 배식차를 여는 방법에 대해 지도하고 교사는 아동과 함께 급식준비에 참여한다. 배식 과정에서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며 앞 사람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학생 안전수칙

<배식 시>

차례로 줄을 서서 서두르지 않고 배식을 받는다. 배식할 때는 장난을 치지 말고 차례를 기다린다. 식판을 옮길 때는 주변에 친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음식물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흐르게 되면 미끄러워져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며, 만약 음식물을 바닥에 흘렸을 경우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 바로 휴지로 닦도록 한다.
뜨거운 음식을 운반할 때에는 흘리거나 튀지 않도록 조심한다. 음식은 먹을 만큼만 알맞게 담도록 한다. 식판을 옮길 때에는 두 손으로 옮기도록 한다.

<급식도구 사용 시>

급식도구는 사용법에 맞게 바르게 사용한다. 젓가락으로 친구를 찌르는 행동을 하지 않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구부리는 장난을 하지 않는다.

<음식을 먹을 때>

음식물은 천천히 꼭꼭 씹어서 삼키고, 입에 음식물을 넣고 말하지 않는다.

(4) 방과 후

방과 후에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안전하고 교육적인 방과 후 활동이 이뤄지도록 노력한다. 이를 통해 학생의 소질 계발과 취미, 특기 신장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가) 청소시간

문 열기-털기-닦기-정돈하기-문 닫기와 같은 청소 순서에 따른 안전한 청소 용구 사용 방법을 지도한다.

① 교사 안전조치

교실 출입문 등은 가능한 미닫이문으로 교체하여 충돌, 협착 등의 사고를 예방한다. 교실바

닥의 물기를 제거하고 청결을 유지토록 한다. 교실 내 액자나 선풍기 등 부착물의 낙하 방지를 점검한다.
교실청소 시 책상 및 양동이 운반 등 중량물 취급 시 가능한 2명 이상이 실시한다. 교실 내 바닥, 통로 등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방책 등을 설치한다.

② 학생 안전수칙

청소 순서에 따라 청소하고, 압정이나 본드로 부착되어 있는 게시물의 먼지를 제거할 때 특히 주의한다. 청소 시간에 비치된 가구나 청소 도구로 장난치지 않는다.
화장실 등의 바닥이 미끄러운 곳에서는 뛰거나 장난치지 않는다. 청소 후에는 대걸레, 빗자루, 양동이 등 청소도구를 제자리에 정리해서 보관한다.

(나) 놀이기구 이용

놀이기구 및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놀이기구 안전수칙을 지도한다.

① 교사 안전조치

㉮ 철봉대, 씨름장 등 각종 체육 시설의 안전성 확보

철봉대 평행봉 등의 적정 크기, 규격 등 구분 설치 및 용접부위 결함 유무를 확인한다. 철봉대, 평행봉 주변(15cm이상)과 씨름장(20cm이상)은 미세모래사장으로 하고 정기적으로 교체하며 모래 턱은 고형물질(나무, 철 등) 사용을 금지한다. 뜀틀, 늑목놀이 시 주변에 매트리스 등을 필히 구비하여 충격을 완화하도록 한다. 축구, 핸드볼 골대 그물 등은 색상이 있는 그물을 설치하고 충격완화용 고무, 스펀지 등으로 안전보호대를 설치한다. 회전체 기구 주위에 사람 접근 방호 장치를 설치한다.

㉯ 운동장의 청소 및 관리

운동장 주변 파손된 하수구, 맨홀, 웅덩이 등을 신속하게 개·보수하고 위험표지판 설치 등으로 추락을 방지한다. 운동장 주변 파손된 울타리, 벽 등은 개·보수 및 교체하고 안전 난간, 안전축대를 설치한다. 나뭇가지가 놀이시설 주변에 나와 있으면 가지치기를 하여 신체 특히 눈이 다치지 않도록 한다.

㉰ 기타 놀이시설 안전 유무

기타 학교 및 놀이시설물 구조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담장에 5mm이상의 균열(Crack)이 발생했는지 경사의 기울기 등을 확인한다.

② 학생 안전수칙

여름철 너무 뜨겁거나 겨울철에 얼어 있을 때에는 이용하지 않는다. 흙 묻은 손으로 얼굴이나 눈을 비비지 않는다. 손에 물건을 들고 놀이기구를 이용하지 않는다. 놀이기구에서 친구를 미는 등 위험한 놀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놀이기구 주변은 위험하기 때문에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친구와 싸우지 않도록 하고, 흙이나 물건을 던지지 않는다.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에는 정해진 계단으로 순서를 지키며 차례대로 타고 내려오도록 하고, 계단을 거꾸로 올라가지 않는다. 계단을 타고 내려온 후에는 재빨리 비켜준다.
그네를 탈 때는 그네가 완전히 정지한 후에 타고 내리고, 친구가 타고 있는 근처에는 가지 않는다. 배를 깔고 엎드려 타거나, 두 명이 한 그네에 타지 않도록 한다. 줄을 꼬지 않고 타야 하며, 그네에서 뛰어 내리지 않는다.
회전대가 회전하는 도중에 뛰어내리거나 뛰어오르면 관성에 의해 사고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회전 중에는 같이 탑승한 사람과 밀고 당기는 등의 장난을 치지 않는다. 회전

대를 갑자기 고속으로 회전시키지 않도록 하고, 회전 중에 회전대를 멈추게 하려고 붙잡지 않는다. 회전대 밑으로 발이나 몸이 끼일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수영장을 이용하는 체육활동 시 수영장 안에서 뛰거나 친구를 밀거나 장난을 치지 않도록 하고 자신의 키보다 깊은 수심에서 수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 보살핌, 청소년 보호 선도,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인성, 창의성, 특기 계발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강사는 현직 교원과 외부강사,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의 가용 인적자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활용한다.
이처럼 방과 후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학교의 학생에 대한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므로 학생들의 안전지도에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 이를 위해 방과 후 학교 관리자는 다음의 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한다.

<표2-1> 방과 후 학교 안전관리를 위한 이행사항

○ 방과 후 학교 안전관리 책임자 임명
○ 학생안전 생활지도 계획 수립
○ 야간지도 책임자 임명
○ 비상연락망 구축학부모 알림체제 구축
○ 방과 후 학교 교실 순시
○ 등하교 관리
○ 차량이용자 관리,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 학교외부인 출입 단속 강화
○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① 안전관리계획

학교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방과 후 학교안전관리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하고, 방과 후 학교 안전관리 계획은 학교안전계획과 연계하되 별도로 수립한다.
안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 학교 구성원들의 역할을 조정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 방과 후 학교 강사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계약서에 명기할 수 있다.

방과 후 학교 강사는 학생의 안전을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지도 강사도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지도・감독 책임을 명시하는 계약)

방과 후 학교 교육활동 시 발생한 사고도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운영 중에 일어난 사안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방과 후 학교 교육활동도 정규 교육 운영과 동일한 보상이 가능하다.
방과 후 학교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유의한다.

- 방과 후 학교 안전관리 책임자
- 학생안전 생활지도 계획
- 돌봄 교실 참여 학생의 야간 귀가지도 책임자
- 방과 후 학교 참여 학생 비상 연락망
- 청소년단체, 토요 스포츠클럽, 동아리활동 등 비상연락망

② 학생관리계획

㉮ 방과 후 학교 참여 학생 안전 및 시설 관리 요령

수강 학생 보호자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지각, 조퇴, 결석 등 학생 출결 상황을 학부모에게 알림 수 있는 SMS 문자서비스 제공 등의 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한다.
방과 후 학교 안전관리 책임자는 방과 후 학교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 귀가 후 교실 순시를 수시로 실시함으로써 학생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방과 후 학교 강사는 수업시간 20분 전 입실하여 학생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점검한다. 교실 사용 후 창문 및 출입문 잠금장치를 확인하고, 전기 장치 및 냉난방기 확인 후 전원을 차단하여 책임 있는 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방과 후 학교 참여 학생 관리 및 하교 지도

방과 후 학교 수업 후 교실에 남아 있는 학생 확인 후 하교 지도를 실시한다. 방과 후 학교 강사는 학생들에 교통규칙 준수 및 안전지도 후 교문 앞까지 동행하여 하교 지도한다.
학생 관리를 위한 상담은 필요 시 교내에서 실시하며, 학교장의 허락 없이 가정 방문 및 학교 밖에서의 학생 지도는 금지된다.

㉰ 차량을 이용한 학생 이동 시 학생 안전지도

학생 이동용 차량 운행 시 인솔자가 동승하여 지도한다.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학생들 차량 탑승 시 담당교사 또는 업무 전담인력,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의 활용 가능한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학교간・학교급간 연계(공동) 활동 시 계약 차량의 운영이 가능하며, 차량계약 시 반드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③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학생, 교직원, 강사 등 방과 후 학교 실시 직접 관계자의 안전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성폭력) 예방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을 실시한다.
학교폭력, 약물 및 사이버 중독, 가출 등 고위험학생과 부모방치・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등 위기학생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생활지도 계획을 수립한다.

㉯ 학교 외부인 출입 단속 강화

외부인 출입 시 방문증 패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무단 외부인 식별, 신고, 단속 등 관리 요령을 숙지한다. 외부강사에게는 외부인과 구분하기 위한 외부강사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식 또는 명찰을 착용토록 한다.

㉰ 기타

방과 후 학교 학생 안전관리를 위해 방과 후 학교 강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 사안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구성하되, 학교보안관 또는 안전지킴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유사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마련하고 이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여 유사 시 대처토록 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처리에 있어서는 사건에 대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당사자와 협의토록 한다.

(5) 각종 행사시 학교안전 의식고취 및 안전문화 확산

(가) 체육대회, 축제, 입학식 등 각종 행사시 계획 단계에서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시행

(나) 행사 시작 전 참석자 대상 1분 안전교육

- 외부인(학부모)이 참석하는 행사, 100명 이상이 참가하는 행사 시
- 위기발생시 대피로, 소화기의 위치, 안전관련 간단한 지식 등 홍보

(다) 학부모 등에 대한 연수 시 동영상, 연수물 등을 이용하여 학교 안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안전 관련 정책에 관심과 참여를 유도

나) 교외안전

(1) 학생안전지역

학생들의 등.하교 경로에는 다양한 사고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교통, 식품, 범죄, 환경 영역별로 학교안전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학교안전구역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활용한 효과적인 등.하교 안전지도 방향을 논의한다.

(가) (교통안전)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은「도로교통법」제12조에 근거하여 1995년부터 시행되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행되는 구역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100인 이상) 시설의 장이 구역지정을 신청하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학교 주출입구에서 300m범위 내 일정 도로구간에 지정, 500m까지 확장 가능하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보도.차도를 구분하는 것과 함께 횡단보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및 과속방지시설.방호울타리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고 노상주차장은 설치를 금지함으로써 안전한 물리적 교통환경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차량 통행금지.제한, 주정차 금지, 이면도로 일방통행 운영 등 교통흐름을 규제하고 차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등 교통속도 규제도 가능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도 시행하며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법규 위반 시 가중 처벌된다.

이와 관련한 사업으로는 통학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워킹스쿨버스, 교통사고 위험지도 제작 및 배포, 녹색어머니회 교통지도 등이 있다.

(나) (식품안전)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은「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제5조 내지 제7조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지정하고 있다.

학교부지 경계선에서 200m 범위 내에서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중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만족하고 고열량.저영양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식품안전지킴이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모집하여 보호구역내의 위생지도.점검, 고열량.저영양식품/위해식품/정서저해식품 판매에 대한 지도.점검, 교육 및 홍보 등을 시행하고 있다.

(다) (범죄안전) 아동보호구역

아동보호구역은「아동복지법」제32조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시설의 장이 구역지정을 신청하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학교부지 경계선에서 500m 범위 내에서 지정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여야 하며, 아동안전지킴이 등 아동안전보호인력을 배치하여 순찰, 아동지도 등을 시행하며 유괴 등 위험에 처한 아동을 위해 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운영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는「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에 규정된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청원경찰, 민간경비(주간) 등이 있다.

(라) (환경 안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학교보건법」제5조에 근거하여 196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교육감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학교, 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에 설정.고시한다.

학교 출입문에서 50m까지의 지역은 절대정화구역, 학교 경계선에서 200m까지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상대정화구역으로 설정된다.

정화구역 내에서는 학교 주변으로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시설 설치는「학교보건법」제6조에 따라 금지되나, 상대정화구역은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정화구역 내 행위 및 시설에 대해 점검하며 금지시설 등이 있을 경우 조치 및 철거 요청을 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표2-3> 학교 주변 안전구역 제도 종합비교

구분	교통	범죄	식품	환경
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아동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	환경위생정화구역
관계부처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근거법	도로교통법(12)	아동복지법(32)	어린이식생활 특별법(5)	학교보건법(5)
지정기준	학교주출입문 300~500m	학교경계 500m	학교경계 200m	(절대)학교출입문 50m (상대)학교경계 200m
지정권자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국가, 지자체	시군구청장	교육감
지정대상	어.유.초.학원	어.유.초	초.중.고	유.초.중.고.대학
전담인력	공무원	아동안전 보호인력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공무원
시설설치	교통안전시설보도, 도로부속물	CCTV	표지판	표지판
행위등 제한	교통규제 주정차.통행금지	-	식품판매 제한	금지 행위.시설 심의해제

(2) 등.하교

학생들의 등.하교길은 위험 요인이 항상 존재하며, 이러한 위험요인은 앞서 살펴 본 교통, 식품, 범죄, 환경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사는 학교 주변의 4개 학교안전구역

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식한 후 학생들에게 학교안전구역별 위험 요인들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위험인식 제고를 위해 학교주변 안전맵 만들기를 해보거나, 학교에서 학교주변 안전맵을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를 배포하여 학교주변 위험요인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도 바람직한 교육방법이다.

(3) 놀이안전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야외 체험활동 증가 등의 정부시책에 따라 학생들의 학교 밖 스포츠 활동이 증가함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의 특징은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인 민간인,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 등과의 충돌로 인한 골절, 뇌진탕 등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배상책임공제의 제3자 피해 보상청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제3자 피해는 교육활동으로 인한 학생의 피해보다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놀이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놀이별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놀이활동에 적합하고 안전한 장소를 확보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데 있다.

(가) 자전거, 인라인 등 이동기구 타기

이동수단만이 아닌 여가나 스포츠활동 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자수가 증가함에 따른 자전거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규모가 2014년도 한해 동안 사망 289명, 부상 18,115건으로 심각한 실정이고, 고가의 자전거가 많아짐에 따라 물적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도로교통법상 '차車'에 해당하는 자전거는 이용의 편리함의 반대급부로 위험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이동수단이다.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전용 도로, 공원, 놀이터, 학교 운동장이나 공설운동장 등의 안전한 장소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자전거를 탈태는 반드시 안전모와 보호장구를 착용토록 해야 하며, 운전 중에는 과도한 핸들 조작이나 과속을 하지 않고 전방을 주시토록 함으로써 만일의 위험에 대비토록 하여야 한다.

인라인 스케이트나 킥보드와 같이 빠르게 움직이는 놀이기구 역시 전용공간이나 놀이터, 학교 운동장 등 안전한 공간에서 타야 한다. 차가 다니는 도로나 주차장, 골목길, 공사장 부근이나 보행자 통행이 잦은 곳은 자동차나 보행자와 충돌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이들 기구도 안전모와 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토록 지도하고 적절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나) 물놀이 및 수상레포츠 안전

물놀이 안전은 야외 놀이활동 중 가장 주의를 요하는 영역이다. 물놀이 중 안전사고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지도가 필요하다.

교사는 학생들의 물놀이 장소의 안전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점검을 하고 물놀이 활동 중에는 물놀이 장소에 배치된 안전요원과 함께 학생들의 움직임을 세심하게 관찰하여야 한다. 적정 수용인원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움직임이 감독자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부적인 물놀이와 수상레포츠 안전수칙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안전매뉴얼을 참고할 것을 권장하고 여기서는 물놀이 안전 10대 수칙을 소개한다.

<표2-4> 물놀이 안전 10대 수칙

① 수영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②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 적신 후 들어간다.
③ 수영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④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다.
⑤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가야 한다.
⑥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즉시 119에 신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 들지 않는다.
⑦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튜브, 스티로폼, 장대 등)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한다.
⑧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⑨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⑩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3) 외부 체험 활동 안전 대책

가) 현장체험학습 활동 안전 대책

○ 외부체험활동 안전대책은 경기도교육청"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침"등에 따라 실시

(1) 원칙: 교육과정과 연계한 소규모.테마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추진

- 준비 ~ 평가까지 학생의 능동적 참여를 강조하는 프로젝트형 모델 권장
- (예시) 7대 안전교육과 연계, 체험학습 전·중·후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교육

(2) (대규모 수학여행) 학생·학부모 동의 절차, 안전요원 확보, 안전대책 등 반드시 수학여행 지원단 컨설팅 후 실시

< 대규모 주제별 체험학습 운영기준 >

- 도교육청(학생안전과)에서 제시한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우선 적용(2016.1)
-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 확보 여부 (50명당 1인 이상, 100명 초과 시 초과 50명당 1인 이상)
- 도교육청 수학여행 지원단 등에서 점검 및 컨설팅 실시
  (대규모 운영에 따른 안전대책 및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성 검토)

(3) 견학 장소 및 야영관련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

(4) 최초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 시행

(5) 이동수단별 안전교육 철저

- 차량(전세버스 등)의 운전자 적격여부, 차량 적합여부 사전 점검 및 안전운행목록 전달
-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안전교육 및 에티켓 교육 실시(2023 체험학습 지침 반영)

(6) 담당 지도교사 임장지도 철저

- 야외 단체 활동은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담당교사와 사제동행으로 실시
- 학급별 비상배낭(가방) 상시 휴대 (구급약품, 비상연락망, 매뉴얼, 무전기 등)(권장사항)

(7) 수련활동은 허가.등록된 시설 및 국·공립시설에서 실시

- 목적, 적정 이동 거리, 학생의 발달단계 등을 고려하여 수련시설을 결정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 홈페이지에서 이용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적정*'이상을 받은 수련시설 확인 후 이용

◇ **체험학습 학생안전 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시** ◇

가) '나의 안전지수' 를 통한 자기점검 실시

나) 토의·토론 기반형 체험학습 안전 교육 실시

- 이동 중, 체험 현장에서 각종 사태 발생시 대응 방안 토의 토론
- 시나리오 작성하기(교통편, 동선, 방문지, 위기상황 설정 등)
- 퀴즈, 일문일답, 게임을 통한 위기 시 대응방안 역할 분담 익히기(신고자, 구조자, 응급처치자 등)
- 역할극 등을 활용한 비상시 대처법 익히기(화재발생시 대처법, 비상탈출 방법, 신고하는 요령 등)

4) 안전약자(요양호자) 안전지도

○ **요보호학생이란?**

-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일반 학생들과 달리 교사의 세심한 관찰과 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말함.

○ **추진방향**

- 3월 건강조사 설문지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상태 및 요보호 학생을 조사한다.
  (정서행동 특성 검사 및 심리 검사 결과의 요보 학생 포함)
- 학교건강검사 및 별도 검사 결과를 가정에 알리고, 가정과 협력하여 지도한다.
- 담임교사와 보건교사, 상담사가 일상 활동 중에 학생 관찰을 통해 정신 심리치료 및 건강관리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상담을 실시한다.

※ 학년 초 전교생 건강실태 조사 실시하며, 전체 학교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교직원에게 요보호 학생 명단 배부 및 학생 주의사항, 학부모 당부사항, 유의 관찰방법, 교사 지도 조언 등 연수 실시로 건강 이상 학생 보호 철저.
- 요보호 학생 기록은 외부에 노출도지 않도록 보안관리 철저
  (기록지에는 전화번호, 지정병원, 투약정보 등 의료 정보, 기타 유의사항 등 포함)
- 담임교사는 알러지 음식이 있는 영양교사(부재 시 담임 및 보건교사)에게, 체육활동이나 교과 활동이 어려운 학생은 교과전담 교사에게 미리 이야기 해주어 학교생활에 참고하도록 한다.

○ **세부계획**

사업명	대 상	기간	비고
요보호자 조사 및 지원계획	* 전교생 건강실태조사 후 담임과 보건교사가 조사하여 선정한다. * 같은 증상으로 보건실을 자주 이용하는 아동을 선정한다. (담임과 학부모에게 연락 후 병원검진 후 선정) * 신체발달상황, 시력검사, 별도검사 등 학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후 이상자 발견 시 선정한다. * 기타 이상자 발견 시 수시로 선정한다.	3월 수시	
요보호자 관리 활동계획 상담	* 증상에 따라 정기적 상담 실시(학생,학부모 상담) * 담임교사와 학부모 연계 유지 * 각종 건강검사 후 이상자 개별교육 * 건강검사, 구강검진 후 이상자 보건교육 및 가정통신문 발송	수시	

○ **장애학생 안전보호 강화**

■ 장애학생별 특성에 적합한 재난대응 지원 방안 마련 및 운영

- 재난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 대피 장소 및 방법, 이동 경로 등
- 재난대응 조력자 지정 제도(Buddy System) 운영
  .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직원 또는 또래를 1:1로 배치
  . 장애학생 지원 방법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특수교사)

■ 교직원 및 일반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 2023학년도 학교 추진계획

- 재난대응 장애학생 조력자 지정 현황

특별배려학생(학년)	조력자
신O호 (3학년)	교내 활동지원사

- 맞춤형 재난대응 지원 방안: 재난대응 조력자 지정을 통해 위의 학생이 우선 대피함. 만일 사건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일시적으로 목발과 깁스 등을 한 학생과 교직원들이 존재하는 경우, 이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활동을 제공
- 장애인식개선주간 운영 : 연 2회(4월, 10월)

5) 학교 안전 관련 학부모 연계

○ 학교장은 학기 초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다음 사항들을 학부모에게 안내하여 학교 안전 관련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연간 안전관리계획 통지
- 건강 이상 학생 학교 통보
- 안전사고 보상제도 통지 등

6) '학교 안전주간' 운영 및 학교안전문화 진단

가) '안전주간'을 지정하여 동 기간 중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연1회)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실시되는 주, 3월 또는 2학기 시작 등 '신학기'의 첫 주 또는 '4월 16일'이 포함된 주 중에서 선택

7) 학교 출입 관리

○ 학교 및 건물 출입지점 안전관리 방침 및 절차

구 분	내 용	
학교 출입 지점 현황	교문 수	3개
	건물 출입구 수	3개
학교 출입지점 관리자	학교배움터지킴이(주간)	1명
	야간당직자(야간)	1명
학교 출입 지점 안전 관리 방침 내용	행정실을 경유하여 방문자 명단 작성 후 출입	

○방문객(차량)의 학교출입 방침과 절차

구 분	내 용
방문객(학부모 포함) 출입 관리 방침	행정실을 경유하여 방문자 명단 작성 후 출입
출입증 관리 방침 및 절차	경비실에 신고 후 행정실에서 외부인 출입증 발급
방문객 및 출입증 관리자	학교배움터지킴이, 행정실

○교내 차량 통행 및 주차 관리

구 분	내 용
차량 통행 관리 방침	교직원 차량 및 학부모, 허가된 방문객 출입 가능
주차 관리 방침	교직원 차량 및 학부모, 허가된 방문객 주차 가능

○ 물품(택배, 식음료 및 자재) 수령 방침 및 절차

구 분	내 용
학부모 음식(간식) 제공 허용 여부 및 방침과 절차	학부모 음식(간식) 제공 불가
급식 자재 배달 차량 및 택배 기사 출입 통제 방침	학생 등하교 시간을 피하여 차량 진입, 지정 장소에 주차

나. 안전사고 관리 및 재난 대응

1) 안전사고 관리 지침

가) 학교 응급의료 관리

(1) 개념

(가) 응급의료와 응급처치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취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응급처치(First-Aid)란 응급의료 행위의 일종으로 생사여부의 기로에서 행하는 기본소생술(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기도폐쇄), 그밖에 신체에 발생한 각종 질환과 외상에 대한 현장에서 행하는 간단한 치료로 구분된다.

(나) 학교 응급체계

학교 응급체계란 학교 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발생한 응급상황으로부터 사고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등의 관리체계를 말한다.

(2) 체계

(가) 응급상황관리 기본계획 수립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대처에 필요한 관리방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응급상황관리 한다.

응급사고 대비 사전 동의서 징구

학년 초「학생건강조사」설문 시 학교 응급환자 관리체계에 대한 안내문과 함께 응급사고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병원이송에 관한 동의서 징구
- 학부모 연락처(1차), 학부모 권한 대행자 및 연락번호(2차, 3차)
- 요보호학생의 경우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
- 학부모에게 연락이 안 될 경우, 학교나 사고현장의 인근 병원 또는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
- 설문조사지 활용에 대한 동의서 미제출자는 동의로 간주

(나) 응급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응급환자 발생 시 상황판단(check), 도움요청(call), 응급처치(care)의 단계로 응급처리를 시행한다.

① 상황판단(CHECK)

<응급상황여부 확인하기> 최초발견자(교직원)는 환자 상태, 주변환경 파악 등 응급상황에 대하여 신속히 파악한 후, 즉시 보건교사에게 연락을 취하고 응급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119에도 도움 요청을 동시에 취한다.

<환자상태 파악하기> 보건교사는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응급처치 및 이송준비를 한다.

② 도움요청(CALL)

<응급구조 요청하기> 환자의 상태가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119에 도움을 요청한다.

119 응급구조 차량 이송 요청 기준

○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경우
 - 기도폐쇄, 심한 호흡곤란, 맥박이 약하거나 없을 때, 출혈이 심한 경우, 의식이 없을 때, 개방골절, 응급수술을 요하는 경우 등
○ 병원 이송도중 증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이송도중 계속적인 의료처치가 필요한 경우
○ 병원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경우
○ 기타 판단이 모호할 경우는 1339 또는 119에 전화 문의

<응급구조체계 가동하기> 학교안전관리연간계획에 따른 응급구조체계에 따라 응급처치와 관리를 수행한다.

③ 응급처치(CARE)

<안전한 장소로 환자 옮기기> 가능한 경우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되, 무리한 움직임을 피하고, 전문가의 응급처치 요령에 따른다.

<응급처치 시행하기>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 동안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정보센터(1339)'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전화상담원의 지시에 따른다.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지시에 의한 응급처치는 법적 문제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된다.

119 구조대가 오기 전에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건교사 및 심폐소생술 가능자가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병원으로 환자 이송하기> 환자의 증상 정도에 따라 학교에서 가까운 응급의료센터, 학교 협약 병원 또는 사전에 파악된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한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치가 가능한 간단한 상해는 보건실 처치 후 부모에게 연락하고 귀가 조치한다.

<기록 및 추후 결과 확인하기> 전문가 인계 및 병원 이송까지의 과정을 6하 원칙에 따라 '응급환자 기록지'에 기록·보관한다. 사고발생 최초발견교사(담임, 현장임장교사 등)는 사고 발생과 관련한 내용을 기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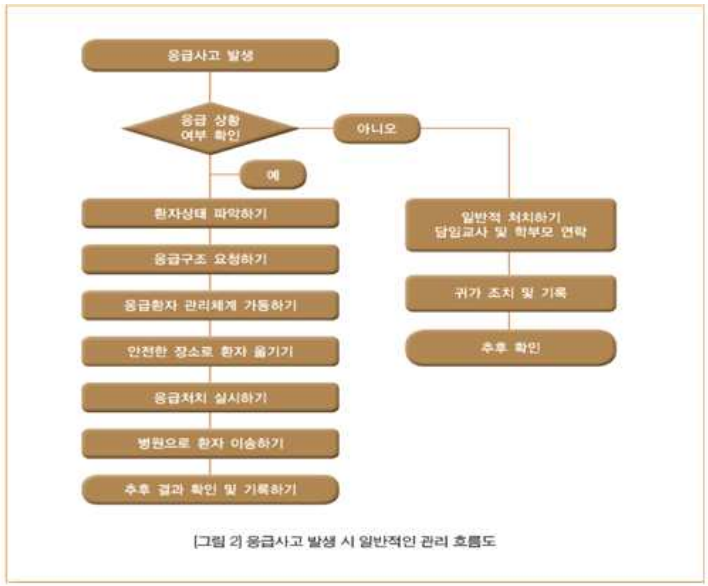

[그림 2] 응급사고 발생 시 일반적인 관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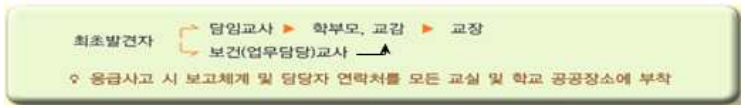

응급환자 보고체계

2) 재난 대응 지침

가) 2023 학교 맞춤형 재난대응 훈련계획

구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학교 분야 및 기능점검훈련	학교 분야 안전 훈련	취약 분야 안전 훈련	취약 분야 안전 훈련	위기대응시스템 점검 훈련 등
훈련 내용	• **교직원 비상 소집 훈련** -재난대비태세 점검 • **학생안전교육** -안전 대피로 그리기	• **현장대응훈련** • **토론기반 학생안전교육** 주제별 안전 수칙 만들어 게시	• **현장대응훈련** -지진 및 화재 대피 훈련 • **학생안전교육** -안전 OX 퀴즈	• **학생, 안전교육** -학생 주도 학교시설안전점검	• **안전문화 실천 운동** - 어린이 교통안전 훈련 및 교통안전 캠페인 • **상황보고 체계 점검 훈련**

나) 재난대비 훈련 연간계획

○ 법적 등 기준에 의한 의무 반영
- 소방(화재) 대피 훈련(연 2회) ※연 1회는 소방서와 함께하는 합동훈련으로 실시
- 안전한국 재난대응훈련(연 1회)
- 지진 대피 훈련(연 2회), 민방위 훈련(연 2회)

○ 연간 훈련 계획

일정	훈련명	훈련유형	대상	담당자	비고
3월	연간 훈련계획 설명회 전국 화재 대피 훈련	토론기반훈련 현장훈련 등	모든 교직원 모든 교직원 및 학생	안전담당	
4월	황사·미세먼지 훈련 실험·실습안전 훈련 체험학습활동 안전사고 예방 교육	토론기반훈련 및 동영상 교육	학교장 및 담당 교직원	안전담당	
5월	창의안전캠프 을지태극연습 연계 테러 대비 훈련	지진대피 훈련/물소화기 체험 동영상 교육 및 현장훈련	모든 교직원과 학생	안전담당	
6월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실습 훈련	모든 교직원	강사	CPR
9월	전국 화재 대피 훈련 합동소방교육	동영상 교육 및 현장훈련	체험학습 지도교사	안전담당	소방서 합동
10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안전한국훈련 연계 지진 대피 훈련	토론기반훈련 현장훈련	모든 교직원과 학생	안전담당	

다) 대응 절차

(1) 학교교육과정 운영 중 재난 발생 시 일반적 대응 절차

(가) 지진, 태풍 등 자연재난은 지역사회 전체에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킴으로 학생의 통학로 유실, 가정도 피해를 입었을 것을 가정하여 대응
(나)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학생을 직접 인솔해서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

(2) 비상 커뮤니케이션의 실행 및 대응절차

(가) 학교는 발생한 재난 또는 학교안전사고의 유형에 따라 교직원 명단과 연락처, 재난대응, 응급의료, 관계기관 등과의 비상연락망(교육청 재난안전관리체계와의 연계 포함), 시설 및 물품공급업체 비상연락처 등에 따른 비상 커뮤니케이션을 실행한다.
(나)비상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도구들은 다음과 같다.
- 유선전화 :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동안 학부모들의 정보요청에 응대하기 위해 학교 전화번호 중 하나(또는 그 이상의 회선)를 핫라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 휴대전화 :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통신수단으로, 교직원들이 이동하는 중에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3) 비상시 초기 대응 및 교직원의 기본 역할

구분	역할(예)	비고
학교장/사고지휘관	- 119(112)신고(필요시 통화담당자 지정) - 방송, 확성기 등을 사용 경보방송(긴급상황, 대피장소, 대피로 등) - 대피절차 지원 교직원 결정 - 지속적인 상황 모니터링 - 교육청관계자에 상황통보 등	
교원	- 학교장/사고지휘관의 지시한 경로에 따라 학생 이동 유도(비상연락 유지) - 1차 대피로가 막혔거나 위험상황인 경우 2차 대피로 이용 - 특별배려자를 도와주기로 지정한 학생에게 대피지원 지시 - 대피장소 도착 시 부상학생 및 인원 확인 학교장/사고지휘관에 보고 등	
행정직원 등	- 전기, 가스, 수도시설 통제 - 출입자 통제, 119 등 외부기관 활동 지원 등	

2. 학교 안전교육의 내실화

가. 학생 대상 안전교육 실시계획

1) 교과 연계 안전교육

가) 교과 연계 안전교육은 각 학년별 교육과정에 맞게 자체 계획 수립하여 실시함

나) 교과 연계 수업계획표 작성 방법

※ 교육부 학교안전정보센터(schoolsafe.kr)의 교과연계 수업계획표 작성 프로그램 적극 활용

※ 교과 연계 안전교육 작성 참조

학교안전정보센터 → 학교안전정책 → [표준]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 작성 예시안과 별첨 → <별첨 6> "안전교육 연간계획표 작성방법"

2)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안전교육

가) 교과 연계를 기본으로 하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나) 학년별로 아래의 양식에 맞게 내용 작성(이지에듀 양식 활용함)

순	관련영역 (차시)		날짜	요일	해당 교과	대단원 (대주제)	소단원(소주제)	차시	학습주제	쪽수	비고
1	교통안전 (12시간)	교통안전(1/15)	3.25	월	국어	-	함께 연극을 즐겨요	5/10	일상 경험을 극본으로 표현할 수 있다	198-201	
2		교통안전(2/15)	3.25	월	국어	-	함께 연극을 즐겨요	6/10	일상 경험을 극본으로 표현할 수 있다	66-68	
3		교통안전(3/15)	4.10	수	사회	1.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3.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6 · 25 전쟁	18/18	6 · 25 전쟁의 전개 과정과 그 결과 겪은 어려움 알아보기	66-68	
4		교통안전(4/15)	4.25	목	국어	-	4. 주장과 근거를 판단해요	3/8	논설문의 특성을 생각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1/2)	124-129	
5		교통안전(5/15)	4.26	금	국어	-	4. 주장과 근거를 판단해요	4/8	논설문의 특성을 생각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2/2)	124-129	
6		교통안전(6/15)	5.13	월	도덕	-	3. 나를 돌아보는 생활	1/4	1. 올바른 삶과 도덕적 성찰을 알아보아요	44-47	
7		교통안전(7/15)	6.14	금	창체	동아리활동	◆동아리 활동	-	동아리 활동	-	
8		교통안전(8/15)	6.14	금	창체	동아리활동	◆동아리 활동	-	동아리 활동	-	
9		교통안전(9/15)	7.24	수	창체	자율활동	◆여름방학식	-	여름방학식(종)	-	

순	관련영역 (차시)		날짜	요일	해당 교과	대단원 (대주제)	소단원(소주제)	차시	학습주제	쪽수	비고
10		교통안전(10/15)	8.19	월	창체	자율활동	◆여름개학식	-	여름개학식(종)	-	
11		교통안전(11/15)	8.23	금	체육	안전	2. 안전하게 야외 체험 활동을 해요	2/5	안전한 야외 체험 활동을 준비해요	128-129	
12		교통안전(12/15)	9.05	목	사회	-	1.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7/14	국가의 일을 나누어 맡아 하는 까닭 생각하여 보기	32-35	

3) 생존수영 실시계획

가) 2023학년도 수영교육 현장체험학습 계획(코로나19로 추후변경가능)

학년	내용	실시예정일	비고
3학년	○ 생존수영 및 자유형 영법 기초교육	미정	이론 및 실기교육

나) 수영교육 실시 중 안전 확보

- 수영 이론 및 수영장 이용 수칙을 반드시 사전 교육하여 안전사고 예방
- 수영장에서 수영교육 실시 중 반드시 지도교사 임장지도
- 수영 전 충분한 준비운동 실시와 학생 건강상태 파악
- 학생 건강상태 파악 후 환자는 참관교육 실시

나.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 계획

1) 교직원 안전연수 이수 의무화

가) 모든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는 교육부 고시에 의거 안전연수 이수 의무

대상		의무 이수시간	법적 의무 / 평가 대상 여부	비고
1. 학교,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도교육청 소속 교원 및 직원		3년마다 15시간 (2023. 12. 31. 이전까지 의무 이수)	법적 의무 ○ 평가 대상 ○	직무연수, 원격연수, 자체연수(전문가 초빙)
2. 계약제 교직원 (기간제교사, 방과후 강사, 원어민 강사 교육공무직원 등)	3년 이상 근로 계약 종사자	3년마다 15시간	법적 의무 ○ 평가 대상 ×	
	6개월 이상 ~ 3년 미만 계약 종사자	6개월마다 2시간 매 학기 2시간 이상	법적 의무 ○ 평가 대상 ×	
	6개월 미만 계약 종사자	없음	별도 규정 없음	학교 자율 실시
3. 교육활동참여자 (배움터지킴이, 학부모폴리스, 조리직원 등)		연간 1회 이상	법적 의무 ○ 평가 대상 ×	자체연수(행정실) (연수자료 활용)

※ **교원 및 직원은** '계약제교직원(기간제교사, 강사, 교육공무직원 등), 교육활동참여자'를 제외한 **[교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말함.

- 경기도교육청 소속 전체 교직원은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을 적용한 15시간 이상 안전연수를 3년 주기로 이수(의무)
  * 3기 : 2021.01.01.~2023.12.31.까지 모든 교직원은 새로 이수해야 함
  * 교육부 표준 안전연수과정 또는 기존과 같이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적용한 안전연수과정 중에서 선택 가능
  * 교육부 고시(2017-121) 제4조 : 교직원은 안전교육을 3년마다 15시간 이상 이수
- 3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여 종사하는 자는 매 학기 2시간 이상 이수
- 교육활동참여자는 매 학년도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 학교장은 교육활동참여자의 안전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나) 모든 교직원은 연간 4시간(실습 2시간 이상)이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 이수

- 학교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의 실시를 위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당해 연도 교육계획 수립

◉ 교육 일시, 장소, 대상자, 교육 강사의 자격(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 ◉ 교육 내용, 외부 협조기관 및 소요 비용 ◉ 기타 교육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학교장은 응급처치 교육 이수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

2) 2023년도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가) 교직원 안전교육 직무연수 이수(2023년 이수예정)

구분	총 교직원 수(명)			안전관련 전문교육(15시간) 이수 대상 예정자			
	교원	직원	계 (A)	교원	직원	계 (B)	이수율 (B/A)×100
인원	14	4	18	14	4	18	100

※ 사이버연수에서 체험중심의 연수가 되도록 추진. 학교안전정보센터 및 학교 안전교육 지원시스템(supportschoolsafe.kr)의 연수정보 및 개인이력 관리 적극 활용

나)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2023년 이수예정)

교육대상 인원수(명)				교육실시 인원 수(명)				실시비율(%)	
학생 (A)	교직원 수			학생 (C)	교직원 수			학생 (C/A)	교직원 (D/B)
	교원	직원	소계 (B)		교원	직원	소계 (D)		
46	14	4	18	46	14	4	18	100	100

3. 학교 시설 안전 점검 · 관리 · 조치

가. 학교 시설 안전 점검

1) 매월 안전 점검의 날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6

○ 전 구성원의 교내 안전 점검, 시설 안전 점검 후 체크리스트 작성, 월별 안전 교육 가정통신문 배부 등

< '안전점검의 날' 구성원별 역할>

구성원	역할(임무)
안전 담당	▸ 재난대응행동요령 등 월별 안전 홍보물 배부 ▸ 점검결과 기록 유지 확인, 점검결과 확인 및 학교장 보고 ▸ 점검결과 기록 및 매월 안전 점검의 날 총괄 및 운영(시설 제외)
행정실장, 시설·소방담당 행정실	▸ 전체 시설 세부 점검(매월 안전 점검의 날 운영), 사각 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 점검결과 기록 유지 확인, 점검결과 확인 및 학교장 보고 ▸ 점검결과 기록 및 매월 안전 점검의 날 운영(시설)
담임교사	▸ 조·종례 및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교실 및 복도 안전점검
담임 외 교사	▸ 교과 교실 및 특별실 안전점검(과학실, 컴퓨터실, 영어실, 도서실 등)
학 생	▸ 교실 및 복도 안전점검

분야	안전 점검 사항
건축	▸ 교실바닥, 교실벽, 교실문, 특별교실, 복도, 계단 등 (예시) 교실바닥은 튀어나온 부분이 없는가(문턱, 계단턱, 마루, 환기구, 스템박스)
전기	▸ 수변전설비, 전기배선, 조명설비, 전열설비 등 (예시) 학생들의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실험 실습	▸ 실습 설비 및 비품, 약품보관 설비 등 (예시) 실험실습 시 안전관리를 위하여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학생과 교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작, 비치하였는가

학교시설 안전관리 업무 관련 점검표

매월 안전점검의 날 체크리스트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6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6)

교실/특별교실(6학년 교실)

위치 : 학년 반 검사년도 : 점검자 :

※ 표시: ○ = 상태좋음 / △ = 전문점검요구 / X = 이상있음 / ㅡ = 해당없음

※ 빈칸에 점검자가 표시 , 회색칸에 특이사항/ 조치사항을 담당자가 기록

분 야	점검항목	3월	4월	5월	6월	7월
기록 예시	*▪ 유리의 금감/깨짐*	○		*△/ 청소불량*		*x, 창문1개 깨짐*
						12/10 교체함
1. 교실 바닥	▪ 1)교실 바닥의 안전상태(바닥균열/마감재 탈락 및 노후화, 보행장애물 여부)					
2. 교실벽	▪ 1)벽체 안전상태(균열 및 기울임 여부)					
	▪ 2)벽체부착물의 안전상태(칠판,게시판,선풍기 등의 고정상태)					
	▪ 3)콘센트의 안전상태(먼지/탄자국, 고정불량, 문어발식 사용여부)					
3. 교실문	▪ 1)출입문 안전상태(레일,손끼임 방지, 부착물 등 상태)					
4. 교실 창호	▪ 1)창호 안전상태(유리,추락방지 보호시설의 고정상태)					
5. 천장	▪ 1)천장의 마감재 안전상태(처짐,파손,누수흔적 등 상태)					
	▪ 2)천장 부착물 안전상태(전등, 선풍기, 냉방설비, 빔프로젝트 고정 상태)					
6. 기타	▪ 1)책걸상 관리상태(파손, 동작 등)					
기타사항:						

※ 교무실, 행정실,등은 위 서식을 준용

2. 공용공간 (현관/계단/화장실/옥상/외벽)

위치 : (예시) 본관동 검사년도 : 점검자 :

※ 표시: ○ = 상태좋음 / △ = 전문점검요구 / X = 이상있음 / ㅡ = 해당없음

※ 빈칸에 점검자가 표시 , 회색칸에 특이사항/ 조치사항을 담당자가 기록

분 야	점검항목	월		월		월
기록 예시	*▪ 유리의 금감/깨짐*	○		*△/ 청소불량*		*x, 창문1개 깨짐*
						12/10 교체함
1. 현관	▪ 1)현관 출입문 상태(손끼임방지, 시건장치, 문짝의 고정)					
2. 계단	▪ 1)계단 미끄럼방지 장치(논슬립) 탈락상태					
	▪ 2)난간의 고정 상태					
3. 화장실	▪ 1)내부 칸막이 고정/파손 상태					
	▪ 2)타일 탈락 상태					
	▪ 3)위생기구 상태(파손, 동작 등)					
4. 옥상	▪ 1)옥상 출입문 상태					
	▪ 2)옥상 난간대 고정 상태					
	▪ 3)옥상 바닥 및 배수로(물받이)의 퇴적물 청소 상태					
5. 외벽	▪ 1)선홈통 안전상태(부착상태 및 청소여부)					
	▪ 2)간판,전광판 등 부착상태					
기타사항:						

3. 외부공간 (운동장/담장/기타)

위치 : (예시) 운동장 검사년도 : 점검자 :

※ 표시: ○ = 상태좋음 / △ = 전문점검요구 / X = 이상있음 / ㅡ = 해당없음

※ 빈칸에 점검자가 표시 , 회색칸에 특이사항/ 조치사항을 담당자가 기록

분 야	점검항목	월		월		월
기록 예시	▪ 유리의 균열/깨짐	○		△/ 청소필요		x, 창문1개 깨짐
						12/10 교체함
1. 운동장	▪ 1)운동장 전반 평활 상태(패임, 장애물, 트랙 주변 단차이 메꾸기)					
	▪ 2)운동장 배수로 안전상태(파손, 패임, 퇴적물의 청소상태)					
2. 담장	▪ 1)옹벽, 석축, 교문, 담장의 이상 유무(균열, 처짐, 기울어짐 등)					
3. 기타	▪ 1)CCTV안전상태(파손, 고정, 작동상태)					
	▪ 2)맨홀 뚜껑 탈락, 파손여부					
	▪ 3)의자, 가로등, 표지판, 식수대 고장 또는 파손					

기타사항:

4. 소방/전기/승강기

위치 : (예시) 본관동 검사년도 : 점검자 :

※ 표시: ○ = 상태좋음 / △ = 전문점검요구 / X = 이상있음 / ㅡ = 해당없음

※ 빈칸에 점검자가 표시 , 회색칸에 특이사항/ 조치사항을 담당자가 기록

분 야	점검항목	월		월		월
기록 예시	▪ 유리의 균열/깨짐	○		△/ 청소필요		x, 창문1개 깨짐
						12/10 교체함
1. 소방 분야	▪ 1)소화 및 감지설비 안전상태(소화기,소화전,수신반,감지기 동작 등 상태)					
	▪ 2)피난 및 방화설비 안전상태(피난구,유도표시 및 방화문 동작, 장애물 등 상태)					
	▪ 3)소방점검 용역업체 점검상태(전월의 지적사항 조치여부 등)					
	▪ 4)소방차 진입로 상태(장애물 존재 등)					
2. 전기 분야	▪ 1)조명설비 안전상태(체육관 포함, 동작·파손·고정 등)					
	▪ 2)전열설비 안전상태(동작, 파손여부 및 문어발식 사용, 개인전열기 사용 등)					
	▪ 3)관리실의 안전상태(전기실, EPS실, 경고표시-위험 및 접근금지 상태여부)					
	▪ 4)전기점검 용역업체 점검상태(전월의 지적사항 조치여부 등)					
3. 승강기	▪ 1)승강기 등 안전상태(승강기,덤웨이터,비상통화장치 등 동작/파손 등 상태)					
	▪ 2)정기점검 용역업체 점검상태(전원의 지적사항 조치여부 등)					

기타사항:

5. 기계/가스

위치 : (예시) 본관동 검사년도 : 점검자 :

※ 표시: ○ = 상태좋음 / △ = 전문점검요구 / X = 이상있음 / － = 해당없음

※ 빈칸에 점검자가 표시 , 회색칸에 특이사항/ 조치사항을 담당자가 기록

분 야	점검항목	월		월		월
기록 예시	▪ 유리의 균열/깨짐	○		△/ 청소불량		x, 창문1개 깨짐
						12/10 교체함
1. 기계 설비	▪ 1)냉난방설비 안전상태(실내기/실외기 동작/파손/부식 등)					
	▪ 2)급수 및 급탕설비 안전상태(펌프,보일러,세면기 등의 동작/파손/부식/누수 등)					
	▪ 3)환기설비 안전상태(팬,덕트,환풍기 등의 동작/파손/부식 등)					
	▪ 4)관리실의 안전상태(기계실,보일러실,PS실, 경고표시-위험 및 접근금지 등)					
2. 가스 시설	▪ 1)가스설비 안전상태(용기,배관,경보 및 차단설비 등 동작/파손/부식 등)					
	▪ 2)관리실의 안전상태(가스보관실,배관분기장소,경고표시-위험 및 접근금지 등)					
	▪ 3)가스설비 정기점검 상태					
기타사항:						

6. 통학로/통학버스

위치 : 검사년도 : 점검자 :

※ 표시: ○ = 상태좋음 / △ = 전문점검요구 / X = 이상있음 / － = 해당없음

※ 빈칸에 점검자가 표시 , 회색칸에 특이사항/ 조치사항을 담당자가 기록

분 야	점검항목	월		월		월
기록 예시	▪ 유리의 균열/깨짐	○		△/ 청소불량		x, 창문1개 깨짐
						12/10 교체함
1. 통학로	▪ 1)교내 차량 통행로 및 통학로 안전상태(인도와 차도 구분, 도로파손, 보행장애물 상태)					
	▪ 2)학교앞 통학로/도로 안전상태(보행장애물, 도로/보도블록/과속방지턱 상태)					
	▪ 3)학교앞 교통시설물 안전상태(교통표지판 시야확보,볼록거울,안전휀스 상태)					
2. 통학버스	▪ 1)어린이통학버스 등록차량여부 및 차량 앞유리에 통학버스 신고필증 부착 상태					
	▪ 2)차내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 또는 안전시트의 설치 및 정상 작동 상태					
	▪ 3)광각 후사경 설치유무(의무사항) 및 고정상태					
	▪ 4)차량 내 날카로운 곳 또는 불필요한 물건의 존치 상태					
	▪ 5)정기적 차량 안전점검 실시 및 기록상태, 안전수칙 부착여부, 안전교육 실시여부					
기타사항:						

7. 어린이놀이시설 및 체육시설

위치 : _____ **검사년도 :** _____ **점검자 :** _____

※ 표시: ○ = 상태좋음 / △ = 전문점검요구 / X = 이상있음 / － = 해당없음

※ 빈칸에 점검자가 표시 , 회색칸에 특이사항/ 조치사항을 담당자가 기록

분 야	점검항목	월		월		월
1. 어린이 놀이 시설 (초등 학교)	▪ 1)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한 안전점검/사고보고서/결과대장 관리여부	※ 기 사용중인 양식대로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하는 것으로 같음. (참조: 학생생활안전과-621(2016.1.22.) 201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계획)				
	▪ 2)부적합 시설에 대한 이용금지조치 및 수리이력 관리대장 작성여부					
분 야	**점검항목**	**월**		**월**		**월**
2. 체육 시설	▪ 1)체육시설의 근본적 낙후/파손상태					
	▪ 2)체육시설의 금이 가거나 깨진부위 존재					
	▪ 3)금속재질 체육시설의 녹발생, 페인트칠 벗겨짐 여부					
	▪ 4)체육시설내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등 이험물질 존재					

기타사항:

8. 급식실

위치 : _____ **검사년도 :** _____ **점검자 :** _____

※ 표시: ○ = 상태좋음 / △ = 전문점검요구 / X = 이상있음 / － = 해당없음

※ 빈칸에 점검자가 표시 , 회색칸에 특이사항/ 조치사항을 담당자가 기록

- 일일 위생안전 점검표, 주간 청소점검표 작성 및 게시여부

※ 기 사용중인 양식대로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하는 것으로 같음.

9. 실험실

위치 : ____________ 검사년도 : ________ 점검자 : ____________

※ 표시: ○ = 상태좋음 / △ = 전문점검요구 / X = 이상있음 / ㅡ = 해당없음

※ 빈칸에 점검자가 표시 , 회색칸에 특이사항/ 조치사항을 담당자가 기록

- 실험실 안전관리 점검표 월1회 작성 및 게시여부

※ 기 사용중인 양식대로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하는 것으로 갈음.

<실험실 안전관리 점검표>

☞ 월 1회 자체 점검 후 점검표를 작성하여 과학실에 게시

2)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안전 점검

○재난 취약시기별 각급 학교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매년3회)
- (시기) 해빙기(매년 2~4월), 여름철(매년 6~7월), 겨울철(매년 10~11월)
- 점검방법 :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행정실, 과학실)

○ 학교에서는 재난위험시설 중점 점검실시(안전점검과 병행)
- 재난(지진.풍수해 등) 시 위기대응체계, 대응방안 및 교육훈련 실시여부 등을 포함하여 점검
- (점검내용) 전체 교육기관: 자체 점검을 실시 → 체크리스트 활용, 관련 내용 보고

나. 학교 시설 안전 관리 및 조치

1)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관리 및 조치

○ 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

○ 2023 상반기 : 학교시설 안전관리 담당자 점검 원격연수 및 행정조치 전달연수

○ 2023 하반기 : 학교시설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시설 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실시 결과보고 서식

가. 점검 일시 : 2023. . .

나. 학교 자체 개선 사항

	주요내용	투입 예산(천원)
1		
2		
3		
계		

다. 개선 지원 요청 사항: 학교 ⇒ 교육(지원)청

	주요내용	추정 소요예산(천원)
1		
2		
계		

[붙임]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점검결과표 1부. 끝.

2)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점검표 (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

※ 해당칸에 ✓를 표시

날짜 : 2023년 월 일 점검책임자 : 소속 :

분야	안전기준	양호	불량	불량사유
건축물	**1. 건축물 주변**: 학생들의 등·하교 길에 안전한 보행과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차량이 통행하는 교문 및 도로에는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한다. 나.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경계 턱이나 가드레일(guardrail) 등을 설치한다.			
	2. 교실바닥 가. 교실바닥은 튀어나온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환기구, 시스템박스 등을 설치할 경우 주변 바닥과 같은 높이로 설			

	치하여야 한다.			
	3. 교실벽			
	가. 칠판을 설치하는 벽면은 칠판이 떨어지거나 엎어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	◦
	나. 석고보드 등의 건식 벽체, 이동식 벽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칠판 등의 부착물을 붙일 수 있도록 보강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	◦
	다. 교실에 노출되는 벽 모서리나 기둥 모서리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한다.	□	□	◦
	라.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 밑 또는 바로 상부 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	□	◦
	4. 교실문			
	가. 교실문은 될 수 있는 대로 미닫이 구조로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교실문의 유효 폭은 90㎝ 이상으로 한다.	□	□	◦
	2) 미닫이 구조로 할 경우에는 손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도록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	□	◦
	3) 미닫이 구조 문의 바닥 레일 부분은 튀어나오지 않도록 한다.	□	□	◦
	4) 미닫이 구조 문의 바닥 문턱은 튀어나오지 않도록 한다.	□	□	◦
	5) 반대편이 보일 수 있도록 일정 높이에 고정된 유리창을 설치한다.	□	□	◦
	나. 교실문을 여닫이 구조로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반대편이 보일 수 있도록 일정 높이에 고정된 유리창을 설치하며, 유리는 충격에 의한 관통 및 파손 시 파편의 비산(飛散)이 없도록 한다.	□	□	◦
	2) 도어체크(문이 자동으로 천천히 닫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나 경첩 등을 설치하여 문이 닫히는 시간을 여유 있게 한다. 다만, 목재문의 경우에는 재질을 고려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
	3)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한다.	□	□	◦
	4) 여닫이 구조 문의 바닥 문턱은 튀어나오지 않도록 한다.	□	□	◦
	다. 피난로에 있는 모든 문은 열었을 때 피난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5. 교실 창호			
	가. 창호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창호의 틀 두께는 벽체의 두께와 같거나 더 얇게 한다.	□	□	◦
	2) 유리는 강도가 충분한 것을 사용한다.	□	□	◦
	3) 유리와 창호 간에 이격(離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
	4) 얇은 유리는 필름 부착 등의 조치로 파손 시 파편 비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	□	◦
	나. 외부 창호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창대의 높이가 실내바닥면에서 1.2m 이하인 경우에는 창호 외부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다만, 해당층이 지표면에 접하는 경우 등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와 추락방지 기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
	2) 외부 창호가 바닥보다 아래에 설치되거나 커튼월(칸막이 구실만 하고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 바깥벽을 말한다)로서 바닥까지 유리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	□	◦
	6. 특별교실			

	가. 화학약품을 사용하거나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특별교실은 바닥 표면을 내화학성(耐化學性)을 지닌 제품이나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난연재료(難燃材料) 이상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	□	◦
	나. 특별교실과 준비실 사이에는 교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창을 두어야 하며 위험성이 있는 실험재료나 기구 등은 준비실에 교사가 관리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	□	◦
	7. 복도			
	가. 복도와 교실(특별교실을 포함한다) 등의 바닥은 높이 차이를 두지 말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 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교실 등의 내부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두어야 한다.	□	□	◦
	나. 복도 벽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복도에 노출되는 벽 모서리나 기둥 모서리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한다.	□	□	◦
	2) 복도의 바닥면은 튀어나온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3) 복도에 독립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을 확보한다.	□	□	◦
	8. 계단			
	가.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계단 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왼쪽 회전 계단 형태로 한다.	□	□	◦
	2) 계단을 갈음하여 설치하는 경사로의 표면은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한다.	□	□	◦
	나. 계단 단 높이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챌판(계단 한 단의 수직면을 말한다) 높이는 일정하게 유지한다.	□	□	◦
	2) 철골조의 경우 계단에는 챌면을 반드시 설치한다.	□	□	◦
	다. 계단 단 너비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초·중등학교의 단 너비는 충분히 확보한다.	□	□	◦
	2) 디딤판의 너비와 챌면의 높이는 고르게 한다.	□	□	◦
	라. 계단참의 너비는 최소 1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
	마. 계단 난간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높이가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난간을 설치한다.	□	□	◦
	2) 너비가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한다.	□	□	◦
	3) 계단이 끝나는 수평 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설치한다.	□	□	◦
	4) 계단 난간의 높이는 계단으로부터의 높이에 85cm 이상이 되도록 한다.	□	□	◦
	5) 계단 난간의 난간살은 난간이 수직재인 경우에는 디딤판 한 단에 2개 이상으로 하고, 수평재인 경우에는 15cm 이하로 한다(난간의 흔들림이 5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	□	◦
	6) 손잡이는 벽으로부터 5cm 이상 떨어져 설치한다.	□	□	◦
	9. 화장실: 화장실 바닥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다.	□	□	◦
	나. 배수는 항상 잘 되는 구조로 하여 바닥이 항상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	□	◦
	다. 난방기기는 통행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받침대를 만들어 설	□	□	◦

	치한다.			
	10. 그 밖의 사항			
	가. 현관 출입문(유리문)은 손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도록 손끼임 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리문은 파손이 어려운 강화유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나. 천창(天窓)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새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유리는 단열 기능이 있고 충격에 의한 관통 및 파편 비산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전기 시설	**1. 수변전설비(受變電設備)**			
	가. 수변전설비를 옥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기기 주위에는 유지관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2)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온이 상승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기구멍이나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	□	□	◦
	3) 습기나 이슬 맺힘 등에 의한 절연 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	□	◦
	나. 수변전설비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지반이 주위보다 높고, 배수가 잘 되는 위치에 설치한다.	□	□	◦
	2) 전기실에 위험 표시를 하고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며, 특히 학생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	□	◦
	2. 분전반: 분전반(分電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구조가 튼튼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	□	◦
	나. 분전반은 기판(基板)에 과전류차단기·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붙여 보호판 등에 의하여 조작하기에 안전한 구조로 한다.	□	□	◦
	다. 분전반 상자를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한다.	□	□	◦
	라. 분전반에 시설하는 기구와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	□	◦
	3. 전기배선: 전기배선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벗겨진 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	◦
	나. 배선에 사용되는 절연 전선·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거죽을 씌운다.	□	□	◦
	다.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자기저항·절연저항·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한다.	□	□	◦
	라.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전기기계 기구 단자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여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한다.	□	□	◦
	4. 조명설비: 조명설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등(燈)기구의 설치는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 기구 몸체의 교체와 철거가 쉽도록 설치한다.	□	□	◦
	나. 소켓은 규격에 맞고 진동·충격 등에 의하여 등의 탈락이나 파손 등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	◦
	다. 옥외에 시설하는 전구는 빗방울로 인하여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갓이나 글로브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먼지·벌레·물방울 등이 등 기구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	◦
	라. 조명설비는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붙인다.	□	□	◦
	마. 화장실이나 식당 등 습기가 많은 곳에 사용하는 기구는 될 수 있는 대로 방수형으로 한다.	□	□	◦
	5. 전열설비: 콘센트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기둥이나 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 벽의 두께, 교구(敎具) 배치, 칸막이 등을 고려한다.	□	□	◦

	나. 바닥에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구의 배치, 예상 통로 등을 고려하며, 물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다. 콘센트 설치의 일반적인 높이는 벽인 경우에는 바닥 위 300㎜, 작업대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대 위 100~300㎜ 정도로 하고, 기계실·전기실·주차장의 경우는 바닥 위 500~1,000㎜ 정도로 한다.	□	□	◦
	라. 한 개의 전용회로에 연결되는 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한다.	□	□	◦
	마. 전기 용량이 30 ~ 50A 이상인 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콘센트는 전용회로로 구성한다.	□	□	◦
설비 시설	**1. 냉난방설비**			
	가. 교실의 실내 온도 및 습도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일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	◦
	나. 난방 기구의 표면 온도가 높아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다. 천장이나 벽에 설치하는 선풍기는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붙여야 한다.	□	□	◦
	2. 환기시설			
	가.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 환기 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나. 실험실 후드 등에서 배출되는 공기는 재순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다. 실험실 후드나 국소 배기설비의 덕트는 불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	◦
	라. 실험실 배기설비의 덕트 속도는 배기설비 내에서 물질의 퇴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분히 빨라야 한다.	□	□	◦
	마. 후드·후드 배기설비·국소 배기설비는 매년 1회 이상 점검·시험하여야 한다.	□	□	◦
	3. 급배수설비 등			
	가. 급수시설·설비는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물탱크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연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	◦
	나.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의 수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다. 급탕(給湯)의 경우 학생 및 교사의 화상 사고를 고려하여 용도별로 적정한 급탕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	□	◦
	라. 모든 위생 기구는 적당한 수량으로 사용 목적에 적합한 합리적인 간격과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소방 시설	**1.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비상경보설비의 작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	◦
	나. 감지기는 벽이나 보(洑)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	◦
	다. 실내에는 그 용도(교실·합숙소·급식실 등)에 적합한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2. 옥내소화전설비 등			
	가. 소화기는 교실에 한 군데 이상, 복도 및 계단에는 보행거리 20m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나. 급식실·보일러실 등 발화위험성이 높은 실내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	□	□	◦

	치하여야 한다.			
	다. 옥내소화전설비는 각 부분으로부터 방수구까지의 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호스는 각 부분을 유효하게 방수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	◦
	3. 피난설비			
	가. 유도등 전원배선을 전용으로 하고, 비상전원(축전지)은 유도등을 최소 20분간 동작시킬 수 있어야 한다.	□	□	◦
	나. 비상구 유도등을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30m 거리에서 문자와 색채를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	□	◦
	다.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며, 통로 유도등은 바로 아래에서 0.5m 떨어진 지점에서 1럭스(Lu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
가스 시설	**1. 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를 설치할 경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용기 보관실은 통풍이 잘 되게 한다.	□	□	◦
	나. 용기 보관실 주위에서는 화기(火器) 취급을 금지한다.	□	□	◦
	다. 경계 표지는 출입구 등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	□	□	◦
	라. 용기 보관실 바닥은 지면보다 높게 하여 빗물 등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	□	□	◦
	마. 용기 보관실의 출입문은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	□	◦
	2. 배관: 가스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건축물 내의 배관은 단독 피트 내에 시공하거나 노출하여 시공한다.	□	□	◦
	나. 건축물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 및 부식 방지 피복 조치를 한다.	□	□	◦
	다. 배관용 호스와 중간밸브 및 연소기와의 접속 부분은 호스밴드 등으로 견고하게 한다.	□	□	◦
	3. 가스 기기: 가스 기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가스온수기나 가스보일러는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	□	◦
	나. 배기통의 재료는 불연성 재료로 하고, 배기통이 가연성 물질로 된 벽 또는 천장 등을 통과할 때에는 금속 외의 불연성 재료로 단열 조치를 한다.	□	□	◦
	다. 자연배기식 반밀폐형 및 밀폐형 연소기의 배기통 끝은 배기가 방해되지 아니하는 구조이고, 장애물이나 바깥 공기의 흐름에 의해 배기가 방해 받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	□	◦
	라. 가스 기기가 설치된 공간에는 환풍기나 환기구를 설치한다.	□	□	◦
실험 실습 시설	**1. 실험실습 설비 및 비품**			
	가. 취급주의를 요하는 실험기구·전기기기·화공약품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취급주의 안전표시를 붙여야 한다.	□	□	◦
	나. 실험실습대와 실험공구는 외관이나 기능이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	□	◦
	다. 인화성 물질(알코올·가스 등)을 사용하는 실험실은 환풍이 잘 되어야 하고, 항상 소화기와 모래주머니를 비치하여야 한다.	□	□	◦
	라.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통로·비상문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들 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	◦
	마. 실험실습 시 안전관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수칙을 학생과 교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작·비치하여야 한다.	□	□	◦
	2. 약품보관설비			

	가. 유해·위험한 물질의 보관설비는 환기기능이 달린 구조로 하는 등 그 물질의 누출 등을 확인하기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	□	◦
	나. 발화점이 낮은 물질(인·황 등)을 보관하는 설비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	□	◦
	다. 화공약품 등 실험약품은 반드시 라벨을 붙이고, 실험 후 남은 시약(試藥) 등 폐시약은 지정된 용기에 분리하여 폐기물 전문가에 의해 배출될 때까지 별도 설비에 보관하여야 한다.	□	□	◦

○ 점검결과 조치계획 : 점검결과 안전기준 미흡시설에 대해서는 적합조치 하도록 함.

3) 개별 법령에 의한 학교시설물 관리

학교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개별 법령의 규정

구분	관계법령	주요내용
건축	건축법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공사 설계도서 건축사 작성(제23조) ◦건축허가 대상 공사의 건축사 감리 지정여부(동법 시행령 제19조) ◦철거예정 7일전 시장군수 구청장 신고(제36조) ◦건축물 철거 후 멸실 신고(제36조)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철거의 경우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제거 및 결과의 기록 보관 (제36조)
전기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7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정기점검* 실시(제65조) *매월 1회 이상, 용량별로 월 3회 이상
도시가스	도시가스 사업법	◦안전관리자 선임(제29조) ◦도시가스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제30조) ◦점검기관(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연 1회 이상 정기검사(제17조)
승강기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승강기관리교육*(제16조) *승강기안전관리자가 지정 3개월 이내 교육이수 ◦월1회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기록부 보관(제17조) ◦연1회 이상 정기검사 및 정기정밀점검*(제13조) *설치 후 15년 이상된 승강기 및 중대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된 승강기 대상
수도시설	수도법	◦수도시설에 절수설비 설치(제15조) ◦저수조 청소*실시, 위생상태 점검** 기록보관 및 수질검사***(제33조) *반기1회 이상, **월1회 이상, ***연1회 이상 ◦수도관리자 교육(제36조) ※ 1년내 8시간의 집합교육 및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교육
하수도시설	하수도법	◦정화조 내부청소* 연1회 이상 실시(제33조) *침전찌꺼기와 부유물질 등 제거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 최단거리 이동편의시설 설치(제3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정(제17조) ◦장애인 접근로 적정 설치(동법 시행령 제4조) - 주출입구에 휠체어 통행용이 및 출입문 시설 - 장애인 복도 통행에 지장 없는 관리 - 장애인용 계단 또는 승강설비 적정 설치 - 장애인용 대.소변기 설치 - 점자블럭,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구비
소방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리(법 제10조) ※ 시설폐쇄, 훼손여부 및 주위 장애 사항 등

구분	관계법령	주요내용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규정 제5조) ◦ 자위소방대 편성.운영(규정 제12조) ◦ 소방안전교육과 훈련 실시(규정 제14조) ※ 연2회 이상 실시 중 1회는 소방서와 합동 훈련 ◦ 자체점검계획 수립 및 자체점검(월1회 이상), 기록보관(규정 제15조) ◦ 소방종합정밀점검(연1회 이상) - 소방서장 보고(법 제19조) ◦ 각실 책임자의 화기단속 및 예방 조치(규정 제9조)
석면	석면안전 관리법	◦ 학교시설 석면조사 실시 및 결과 보관(제21조) ◦ 석면조사결과 보고 - 교육감(제22조) ◦ 석면안전관리자 지정 보고 - 교육감(제23조) ◦ 석면안전관리자 안전관리 교육(제24조) ※ 관리자 신고 후 1년이내 6시간 이상
급식시설	학교급식법 시행령	◦ 안전한 조리기기, 냉장.냉동시설, 세척.소독시설 구비(제7조) ◦ 급식관리실에 필요한 사무장비 구비(제7조) ◦ 조리종사원 숫자에 맞는 휴게시설 구비(제7조) ◦ 급식시설 설치 시 기준*에 따라 시설설비 구비(시행규칙 제3조) *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시설설비 기준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 안전검사기관 정기시설검사(2년 1회 이상) 결과 표시(제12조) ◦ 자체안전점검 월1회 이상 실시(제15조) ◦ 3년간 안전진단실시결과 기록보관(제17조) ◦ 놀이시설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실시(제20조) ※ 2년 1회 이상, 1회 안전교육 4시간 이상 ◦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가입(제21조) ◦ 어린이 놀이시설 사용금지의 경우 관리감독기관에 통보(제16조) ◦ 어린이 놀이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적합(제11조)
외부인 출입	초중등교육법	◦ 외부인 출입, 학교폭력예방 학생안전대책 수립(제30조)
학교보건	학교보건법	◦ 보건실 66㎡이상 확보 및 세부기준 적합여부(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학생안전교육, 학교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조치(제12조) ◦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제4조) ◦ 학교 환경위생담당자 지정.관리(규칙 제3조) - 교내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 관리 -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 -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 -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 관리
공사발주	산업안전 보건법	◦ 공사 발주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제30조) ◦ 석면 해체 시 등록업체(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 해체.제거(제38조)
시설사업 촉진	시설사업 촉진법	◦ 학교신설, 학교용지 변경시 교육청에 사업시행계획 승인(제4조) ◦ 학교용지 내 시설물 증축, 대수선의 경우 교육청 건축승인(제5조) ◦ 시설사업 종료 후 7일 이내 교육청 신고 및 건축물 사용승인(제18조)
폐기물 관리	폐기물관리법	◦ 생활폐기물의 종류, 성질, 상태별 분리보관(제15조) ◦ 사업장 폐기물의 전문업체 위탁 처리 여부(제15조)
하수도	하수도법	◦ 학교 내 하수 및 배수관 신설의 경우 공공하수도 유입(제27조) - 교내 오수 배출 건물 증축 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제34조) *정화조 등의 시설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제37조) -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준*의 의한 설치(제24조) *하수처리구역안 정화조설치, 하수처리 구역 밖 1일 오수처리량 2㎥이상 오수처리 장치 연결, 그 이하 정화조 설치

○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점검 실시

4. 학교안전 문화 확산

가. 안전 업무 관련 교직원간 협력 체계구축

1) 안전 가치의 최우선적 인식 문화 확산

○ 학교 안전의 가치는 안정적 교육활동 수행의 기본 전제가 되므로 제반 교육활동 계획 수립부터 실시에 이르기까지 최우선적으로 학교 안전의 가치를 고려하는 학교 문화 만들기

2) 안전 업무 관련 교직원간 역할 명료화

○ 학교장은 학교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교원과 직원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설정

○ 학교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안전한 교육활동이 되도록 적극 노력

※ 학교안전은 담당 교원만으로는 업무추진이 어려우므로 교원과 직원 간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

나. 학교안전 자가점검표

1) 학교안전 자가점검표 작성

구분	영역	세부점검내용	전년도 추진실적			계획수립	
			○	△	×	○	×
1.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기본계획, 지역계획, 학교계획	학교계획 수립 시 안전담당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였는가?					
		학교계획에서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교직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명확히 기술하였는가?					
		학교안전계획의 취지와 목표를 학교실정에 맞게 적절히 설정하였는가?					
		우리 학교는 학교와 주변지역의 위험성을 파악한 후, 이에 적합한 학교안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학교안전계획은 교직원들 간에 명확히 공유되었는가?					
		안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시간, 정보, 인원, 예산 등)과 수행 절차는 파악되었는가?					
2교육활동 운영의 기본지침	학사일정별 학교안전	학사일정별 연간 안전관리계획은 각 계절별 재난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체험과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을 계획하였는가?					
		안전학습 관련 컨텐츠는 적절하고 풍부하게 준비하였는가?					
		시기, 활동, 행사별로 발생하기 쉬운 사고나 취약학생 혹은 구역을 파악하여 예방조치를 할 계획을 세웠는가?					
	외부체험활동 안전	현장체험학습 계획 시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의 사항들을 교사들에게 공지하고, 계획에 게재하였는가?					
	학교주변 안전관리	학교안전의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지자체, 소방서, 경찰서등) 간 협력 계획이 마련되었는가?					
		스쿨존 정비 방법은 마련되었는가?					
	안전약자 안전대책	요양호자(안전약자)를 파악하고, 안전약자 안전대책에 따를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3. 학교안전교육	예방 및 학교안전교육	안전교육 연간 계획표에서 학교와 학교 주변에 존재하는 위험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교육 계획에 포함시켰는가?					
		안전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배려도 교육에 포함 시켰는가?					
		학생 참여형 안전교육을 준비했는가?					

구분	영역	세부점검내용	전년도 추진실적			계획수립	
			○	△	×	○	×
		안전교육 교사연수 연간계획은 준비 되었는가?					
		안전사고 유형별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교과 연계 방법이 수립되었는가?					
		안전 전문가 초빙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정기훈련	학교구성원 모두 체험할 수 있는 훈련계획을 수립하였는가?					
		훈련은 구체적 목표 및 평가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훈련은 체험형·토의형으로 수립하였는가?					
		학교에서 일어날 위험이 높은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재난대비훈련을 계획했는가?					
		심폐소생술의 이론과 방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안전약자를 포함한 훈련계획을 수립하였는가?					
4.학교시설 안전점검·관리 및 안전조치	매월 안전점검의 날(제6조)	매월 안전점검의 날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안전관리(제7조)실시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점검을 계획·실시 하였는가?					
	CCTV 관리	CCTV 관리 업무 분장은 명확한가?					
5. 학교 안전문화 확산		안전 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기록하고 자료를 기록해서 공유하며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각종 안전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공유·적용하고, 자주 사용하는 자료는 정기적으로 갱신, 정비하여 손쉽게 찾아 쓸 수 있게 준비하였는가?					
		학교 구성원의 안전 관련 행동, 실천, 태도 등에 대해 인정과 격려를 해 줄 수 있는 학교 풍토가 조성되어 있는가?					
		학교안전은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확보될 수 있다는 가치관 확산을 위한 홍보.협업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안전관리활동에 따른 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방안을 마련했는가?					
		학교구성원이 학교안전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했을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가?					
6. 기타 사항		재난과 학교안전사고의 보고와 보상에 관한 절차와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마련해 놓았는가?					

2) 3대 진단(위험성 진단, 학교안전풍토 진단, 교원안전역량 진단) 내용의 포함

○ 자가점검표에는 기존의 교육부 연구에 의해 마련.시행 중인 위험성 진단, 학교안전풍토 진단, 교원안전역량 진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 3대 진단은 2019년도부터 학교안전 자가점검표로 대체

○ **학생참여 및 학교맞춤형 재난대응 훈련 계획 수립·시행**(7대안전교육부분에서 연 6시간 확보)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시 2회 이상 실제훈련 실시
- 이론 에서 탈피한 몸으로 체험하는 실질적 훈련 (소화기 사용법, 대피호 위치 확인 등)
- 안전생활 습관화 및 안전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 학생 참여 강화
- 상황별 재난 단계별 교직원 상황 판단 및 보고, 조치능력 강화
- 학교장 중심의 교직원 상황판단 회의와 실제훈련 병행 추진

5. 안전사고 피해 회복

가. 학교안전 관련 인적·물적 피해보상

1) 학교안전공제

가)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절차

○ 교육활동의 정의(학교안전법 제2조제4호)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교육활동 관련 시간(학교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 학교안전사고의 정의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교육활동 관련 시간(학교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3조(학교장의 관리·감독하의 질병)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2. 일사병(日射病)
3.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4.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5.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나) 학교안전공제 개요

○ 17개 시·도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를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하며, 시·도 교육감이 설립한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사업자가

됨

○ 유치원장, 초.중.고등학교장, 평생교육시설장, 한국학교장은 의무가입자가 되며, 외국인학교장은 임의가입자가 됨

○ 학교안전공제 피공제자는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됨

*학교안전사고로 교직원이 입은 피해는 공무원연금 또는 사립학교연금 등을 통해 공무상 상해로 보상 처리가 가능하므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고,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소송 또는 법적 절차 수행에 수반되는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참여자 :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 공제료 고시와 결정

구분	유 치 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2015년도	1,860원	2,940원	5,920원	7,210원
2016년도	1,940원	3,160원	6,360원	8,020

다) 공제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비용
- 국민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급여항목 치료비 전액과 국민건강보험에서 불인정하는 비급여 항목 치료비의 일부 항목*에 대하여 지급

*선택진료비, MRI, 무통주사제, 화상치료재, 성형수술비, 응급의료 관리료, 물리치료, 치아보철, 재활보조기구 및 통합재활훈련, 진단서 발급 수수료, 외국 체류 중 치료

○ 장해급여

-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기준에 의거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
- 일실수익(생활비 포함)과 위자료를 지급대상으로 하며, 유치원부터 고등학생의 경우 호프만계수가 적용됨에 따라 최대 3~4억원의 보상금이 산정
- 간병급여는 치료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는데 주로 장해 1·2급 사고자가 대상

○ 유족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기준에 의거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
- 일실수익(생활비 제외)과 위자료를 지급대상으로 하며 생활비를 제외하기 때문에 장해급여보다 약 5천만원이 적은 2.5~3.5억원의 보상금이 산정
- 사망 시에는 장례에 소요될 비용으로 평균임금의 100일분에 상응하는 장의비를 별도로 지급

○ 위로금

- 위로금은 심장마비, 돌연사 등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4천만원을 정액으로 지급

○ 비용의 보전

- 교직원 등이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방지비용, 필요비 및 유익비, 민.형사소송비용 및 공탁금 등을 지출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이를 보전하여 주는 제도
-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교직원이 부담하는 법절차 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교단의 안정을 꾀함을 목적

○ 공제급여의 지급제한

- 피공제자가 자해, 자살한 경우, 피공제자가 요양기관 지시 불이행 또는 치료를 명백히 방해한 경우, 수급권자가「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부지급

○ 과실상계와 기왕증 감액

- 요양급여를 제외한 장해.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로서 장해.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함에 있어 피해학생의 과실이 개입된 경우 손해와의 인과관계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금액을 감액하고 지급
- 과실상계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에 대하여 50% 이하로 적용될 수 있으나, 인지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신체적 결함이 있는 피공제자에 대하여는 미적용
-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 기왕증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 가능

○ 구상권 행사

-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대법원 2003다13307)

교직원의 중과실 관련 법원 판결례

○ 유치원생이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담임교사가 귀가에 관한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등 유치원 교사로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여, 교사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만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96다19833)

○ 중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중한 체벌을 가하게 된 동기가 …… 다분히 감정적인 면에도 기인하고 있다고 보이며, 또 교사가 체벌을 가한 부위가 …… 머리 부분으로서 …… 더욱이 체벌을 가한 방법이 막대기만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구둣발로 여러 번 차는 등 심히 비인격적, 비교육적 방법까지 사용하여, 그 결과 학생으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후유장애로 일반노동능력의 70퍼센트를 상실하게 하였다면, …… 징계의 목적으로 체벌을 가하는 교사로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함으로써 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89다카16178)

○ 담임교사는 …… 반 학생들이 사교적이지 못한 갑을 폭행하거나 괴롭힐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방하거나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인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반 학생들 사이의 집단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담당교사의 과실이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교사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0895)

○ 공립 초등학교 6학년생이 과학담당 교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과학실에 들어가 화산분출실험을 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한 후 과학담당 교사와 교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과학담당 교사의 중과실을 인정하고 교장의 중과실은 부인한 사례(청주지방법원 98가합1154 판결)

라) 학교안전사고 통지와 공제급여 청구

○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제가입자인 학교장은 지체 없이 학교안전공제회에 통지(학교안전법 제44조제2항)

○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학교안전법 제41조제1항)

마) 공제급여의 결정

○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종류별로 공제급여액을 결정(학교안전법 35조제1항).

- 피해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안전공제회는 14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다만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4일을 연장 가능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 등으로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액 또는 배상액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된 금액은 공제급여액으로 보아 학교안전공제회가 이를 부담(학교안전법 제35조제2항).

○ 국민건강보험 구상권행사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액(학교안전법 제36조제2항)

- 법원의 판결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은 학교안전공제회가 부담

바) 공제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

○ 학교안전공제는 학교안전사고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청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3심 제도를 두고 있음

○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설치된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가능(학교안전법 제57조)

○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대하여도 불복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설치된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학교안전법 제61조)

○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도는 사고 관련자 간의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교단의 안정이 침해되고, 불필요한 법적 비용 발생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원 소송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임

사) 심리치유제도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학교안전법 제10조의3)

○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상담 및 심리적 치료의 지원대상자를 정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지정된 상담 및 심리적 치료기관을 통지

아)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법적 대처요령

○ 학교안전사고는 학생들 간의 장난, 게임, 사소한 다툼 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쌍방의 과실이 경합되는 등 처리가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

○ 가해자가 명확한 경우라 해도 그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으며, 경제적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도 발생가능

○ 초기 대응이 미숙할 경우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팽배하고 학교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어 의사소통에 어려움 발생 가능

○ 학교안전사고 처리과정에서의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 해결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사고처리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사고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으므로 각별한 유의 필요

○ 보건교사 혹은 사고현장 관리교사는 사고발생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육하원칙에 의해 기록하고 사고현장 사진을 확보하며, 주위에 함께 있던 학생 등도 기록. 아울러 교사의 직무 수행과 사후조치 내용도 기록

○ 책임관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고발생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증인을 확보

○ 사고처리에 있어 사고담당자를 지정함으로써 학교 측의 창구를 단일화

○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은 학생의 친권자인 학부모와 직접 협의한다. 학부모 아닌 제3자 개입 시, 사고처리의 본질 왜곡 가능

- 손해사정사가 피해학생을 대신하여 금전적 대가를 받고 피해보상을 중재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109조를 위반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 학교안전사고의 처리와 관련한 법적 자문 방법

- 시도교육청 법무담당관실에 소속된 변호사 자문
- 학교안전공제중앙회(1688-4900) 또는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콜센터 문의

2)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사각지대공제사업

○ 교육활동 또는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되었음에도 학교안전법에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

구분	가입자	보상대상	보상범위
학교배상책임공제	학교장	교육활동 제3자피해, 휴대폰 도난피해 어린이놀이시설 피해, 급식과태료	대인.대물 1억 과태료500만원
청소년활동안전공제	청소년 단체장	청소년활동 중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1인당 10억 대물 1억
	수련시설장	수련활동 중 안전사고 피해	학생 : 국가배상기준 기타 : 8천만원
한국학교안전공제	한국학교장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피해	요양급여 : 2천만원 장해,유족,간병 : 2억원

3) 물적 피해 복구(교육연구시설공제)

○ 화재, 폭발, 붕괴 및 태풍 등으로 인한 학교건물 및 물품의 피해와 이 피해로 인한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 교육시설 재난공제회는 교육연구시설공제를 운영

○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교육연구시설의 피해복구와 안전도모를 위해 각급학교 경영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민법(제32조)상 사단법인적 성격의 공익법인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 및 제5조(보험가입 의무)에 따라 당해 특수건물은 손해보험회사 또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가입대상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의 학교건물 및 교육지원시설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임

○ 가입주체는 유치원장, 초.중등학교장, 대학총장, 학력인정시설의장임

○ 공제료 산정방식

◦ 건물 : 건물면적 × 단위공제료(원)
◦ 고가건물 : 가입금액 × 적용비율(%)
◦ 폐교건물 : 건물면적 × 단위공제료(원)
◦ 물품 : 물품취득가액(100만원 이상) × 적용비율(%)
◦ 건물 부속물 : 부속물 신설단가 × 적용비율(%)

○ 보상범위

- 건물.물품은 화재(벼락 포함), 폭발, 붕괴 및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로 인한 피해를 보상
- 인명손해는 건물의 화재(벼락 포함), 폭발, 붕괴 및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로 인한 신체손해를 보상

○ 보상기준

- 건물.물품은 전손全損인 경우 건물의 현시가와 관계없이 신축단가를 지급하고, 분손分損인 경우 복구 실소요액을 지급
- 인명손해는 부상의 경우 치료실비를 전액 지급하고, 사망.장해의 경우 호프만계수에 의해 산출한 실손해액을 한도 없이 지급

○ 가입종류와 공제기간

- 정기가입은 매년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에 온라인으로 가입신청을 하고 공제회에서 납부토록 고지한 기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공제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 추가가입은 가입절차는 정기가입과 같으나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르며, 공제기간도 가입신청서 접수일로터 12월 31일까지임.

공제사업	학교안전공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사각지대 공제사업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교육 연구시설공제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공제료 납부	행정실	·	·
사고통지 담당	각 담임교사	·	·
보상청구 담당	·	·	·

나. 학교안전사고 피해회복지원

○ 향후 정책연구를 통해 학교안전사고 피해회복지원단과 분쟁조정지원단이 구성되고 활동이 개시되면 개별학교에 대해 제도 시행을 통보 예정

○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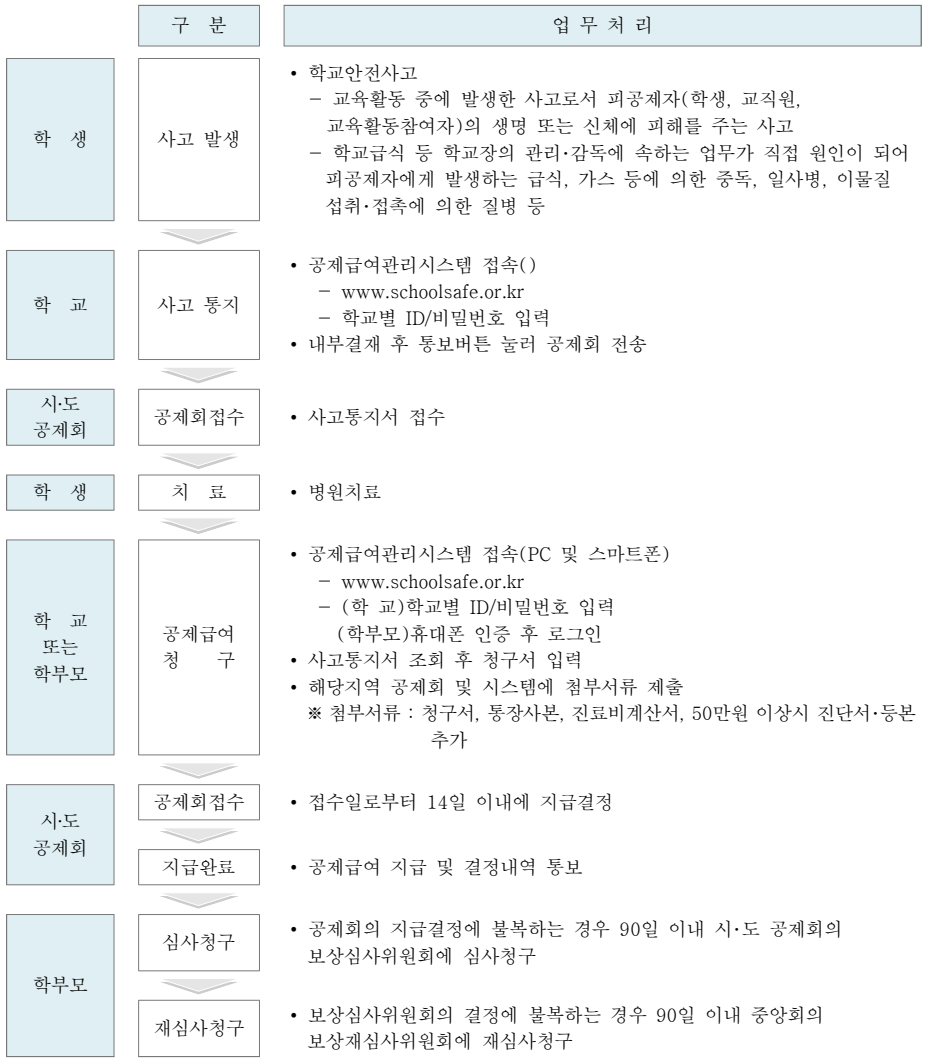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배상책임 공제급여 청구절차>

	구 분	업 무 처 리
피공제자 및 제3자	사고 발생	• 학교배상책임사고 – 교육활동 또는 학교시설물 관리업무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 및 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차량파손 피해 – 어린이놀이시설 하자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 학교급식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제101조에 따라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 학교승강기사고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 학교 관리 하의 학생 휴대품 분실·파손 피해
학 교	사고 통지	• 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 접속 – http://ssifins.or.kr:8001/ – 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 사고등록 후 통보버튼 눌러 공제중앙회 전송
공제 중앙회	사고 접수	• 사고통지서 접수
피공제자 및 제3자	치료·수리	• 병원치료 및 파손물품 수리 진행
학 교 또는 피해자	공제급여 청 구	• 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 접속(PC만 가능) – http://ssifins.or.kr:8001/ – 학교별 ID/비밀번호 입력 • 사고통지서 조회 후 공제급여청구서 입력 • 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시스템에 증빙서류 첨부 ※ 진단서, 영수증, 수리내역서, 수리완료사진, 통장사본 등
공제 중앙회	청구 접수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결정
	지급 완료	• 공제급여 지급 및 결정내역 공문 통보
피해자	심사청구	• 공제중앙회의 지급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참고1]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에 대한 고시

【별표1】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

(단위: 단위활동, 차시)

구분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교육시간	유치원	13	10	8	10	6	2	2
	초등학교	12	11	8	10	6	2	2
	중학교	10	10	10	10	6	3	2
	고등학교	10	10	10	10	6	3	2
횟수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3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참고: 1.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외 한국학교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경우는 인정되는 학력에 해당하는 학교급에 맞추어 실시한다.

2. 학교안전교육 실시 시간의 단위는 유치원은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단위활동이며, 초·중등학교는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차시이다.

3. 학교급별 제시하는 안전교육 시간은 학년별(유치원은 연령별) 실시해야 할 시간을 말하며, 횟수는 영역별 안전교육 시간을 학기당 제시된 횟수 이상으로 분산·실시해야 함을 말한다.

4. 학교(유치원 포함) 운영 성격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총 이수시간의 범위 내에서 안전영역별 이수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운영(20% 범위 내, 소수점은 올림처리)할 수 있다.

5. 재난안전교육은 재난 대비 훈련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을 달리하여 매 학년도 2종류 이상을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6. 1단위활동 및 1시간(차시)의 수업 시간은 교육과정을 따르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별표2】

학생 안전교육 내용 및 방법

구분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교육내용	유치원	1. 교실, 가정, 등하굣길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 2. 안전한 장소를 알고 안전하게 놀이하기 3. 놀이기구나 놀잇감, 도구의 바른 사용법을 알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4. 실종, 유괴, 미아 상황 알고 도움 요청하기 5. 몸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알기	1. 표지판 및 신호등의 의미 등 교통안전 규칙 알고 지키기 2. 안전한 도로 횡단법 알기 3. 어른과 손잡고 걷기 4. 교통수단(자전거, 통학버스 등)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내몸의 소중함과 정확한 명칭 알기 2.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알기 3.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알기 4. 나와 내 주변사람(가족, 친구 등)의 소중함을 알고 사이좋게 지내기 5. 아동학대 신고 및 대처방법 알기	1. 올바른 약물 사용법 알기 2. 생활주변의 해로운 약물·화학제품 만지거나 먹지 않기 3. T.V, 인터넷, 통신기기(스마트폰 등) 등의 중독 위해성을 알고 바르게 사용하기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알기 2. 화재 발생 시 유의사항 및 대처법 알기 3. 각종 자연 재난 및 사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 알기 4.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 실시	1. 일터 안전의 중요성 및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일 알기 2. 일터 안전시설 현장 체험하기	1. 응급상황 알기 및 도움 요청하기 2. 119신고와 주변에 알리기 3. 손씻기와 소득하기 등 청결유지 하기 4.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알기
	초등학교	1. 안전하게 교실, 가정, 공공시설 이용하기 2. 학용품·놀이용품의 안전한 사용 및 식품 안전 알기 3. 실험·실습 시 안전에 유의하기 4. 안전한 놀이활동 및 야외 활동 5. 유괴예방, 미아사고 예방과 대처	1. 안전한 통학로 알기 2. 교통수단(자전거, 대중교통 등)의 안전한 이용법 알기 3. 교통 표지판 등 도로 교통 법규 알기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처법 알기 2. 학교폭력의 종류를 알고, 종류별 예방법 알기 3.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알기 4. 내 몸의 소중함을 알기 5. 아동학대의 유형 및 대처방안 알기 6. 가족폭력의 개념과 대처방안 알기 7.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1.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 및 올바른 약물 복용법 알기 2. 중독성물질을 알고 안전한 활용 방법 3. 건전한 사이버 통제 능력 배양 및 사용습관 형성하기	1. 화재의 원인 및 대피요령, 신고, 전파요령 알기 2. 화상 대처 요령 알기 3. 각종 자연 재난과 안전한 행동 알기 4. 폭발 및 붕괴, 테러 위협 유형별 대처 요령 알기 5.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 실시	1. 일터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알기 2. 일터 안전시설 현장 체험하기	1. 응급처치의 상황, 의미, 중요성, 신고·조치 방법 알기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법 알기 3. 상처의 종류와 응급처치 하기 4. 일생생활 속 응급처치 알기
	중학교	1. 공공시설 이용 시 안전과 에티켓 알기 2. 식품의 종류에 따른 안전한 보관 방법 알기 3. 실험·실습실 및 체육·여가활동의 안전규칙을 이해하고 바른 사용법 알기	1. 이륜차의 안전한 이용과 점검방법 알기 2. 자동사 사고의 원인과 예방방법 알기 3. 대중교통 이용 안전수칙 알기	1. 학교폭력의 유형과 현황 및 위험성 인식하기 2. 학교 폭력 유형별 신고·대처방법 알기 3. 자살예방 및 스트레스 점검과 해소 방법 알기	1.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2.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3. 인터넷 게임 사용 규칙 만들기 및 실천	1. 화재의 원인 및 대피·대응요령, 신고, 전파요령 알기 2. 화상 대처 요령 알기 3. 각종 자연 재난과 안전한 행동 알기	1. 직업 안전 문화의 필요성 2. 산업 재해의 의미·유형과 사례별 발생 현황 이해하기 3. 안전장비의 올바른 사용방법 알기	1.응급처치의 상황, 의미, 중요성, 신고·조치 방법 알기 2.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법 알기 3. 상처의 종류와 응급처치 하기

구분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4. 실종, 유괴, 미아 상황 알고 예방하기		4. 가족과 올바른 의사소통방법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알기 (아동학대 포함) 5. 성폭력 대처예방 및 대처법 알기 6. 성매매의 위험성 인식하기 7.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4. 스마트폰의 건전한 사용 방법	4. 폭발 및 붕괴, 테러 위협 유형별 대처 요령 알기 5.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 실시		4. 일생생활 속 응급처치 알기
고등학교		1. 기호식품의 특성·유해성 및 전기·전자제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 알기	1. 이륜차의 안전한 이용과 점검방법 알기	1. 학교폭력의 유형과 현황 및 위험성 인식하기	1.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1. 화재의 원인 및 대피·대응요령, 신고, 전파요령 알기	1. 직업병의 진단, 예방 및 대처방안 알기	1. 응급처치의 상황, 의미, 중요성, 신고·조치 방법 알기
		2. 실험·실습 안전 수칙 이해 및 보호장구의 바른 사용법 알기	2. 자동사 사고의 원인과 예방방법 알기	2. 학교 폭력 유형별 신고·대처방법 알기	2.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	2. 화상 대처 요령 알기	2. 작업장의 안전수칙 및 보호장비 알기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법 알기
		3. 체육 및 여가활동의 안전한 활동 상해 시 대처방법 알기	3. 대중교통 이용 안전수칙 알기	3. 성폭력 예방과 대처방법 알기	3. 인터넷 게임 사용 규칙 만들기 및 실천	3. 각종 자연 재난과 안전한 행동 알기	3. 산업 재해의 의미·유형과 사례별 발생 현황 이해하기	3. 상처의 종류와 응급처치 하기
		4. 실종, 유괴, 미아 상황 알고 예방하기		4. 성매매의 위험성과 구조 및 신고 방법 알기 5. 자신과 타인(가족 포함)의 소중함 인식하기 6. 가정폭력 예방 지침을 알고, 보호하기(아동학대 포함) 7.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4. 스마트폰의 건전한 사용 방법	4. 폭발 및 붕괴, 테러 위협 유형별 대처 요령 알기 5.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 실시		4. 일생생활 속 응급처치 알기
교육 방법		1. 학생 발달 수준을 고려한 전문가 또는 교원 설명 2. 학생 참여 수업 방법 연계 적용 (예시 : 역할극, 프로젝트 학습, 플립러닝 등) 3. 교내외 체험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부모 교육 연계						

[참고2] 안전사고관리지침 해설서

1. 상황파악·전파

❑ 환자 상태 파악

피해자의 전반적인 모습·행동과 주변환경, 추가위험(2차 피해) 여부 파악
(필요 시 피해 부위 사진 촬영)

○ 상태 파악 시 교내 응급처치 여부 및 응급환자* 여부 파악 필요

* 응급환자 여부 파악 방법 : 의식소실, 호흡곤란, 과다출혈 등 [붙임 #1]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응급증상 및 응급에 준하는 증상 참조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학생은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면밀히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관찰

❑ 일반 상해발생 상황

인근 교직원에게 상황전달

- 최초 발견자는 담당교사* 또는 보건교사 등 인근에 있는 교직원 등에게 상황전달

* 담당교사 : 담임교사 또는 교과교사를 의미

최초 발견자	세 부 내 용
학 생	• 인근에 있는 최초 발견 교직원에게 상황전달
교직원	• 보건교사와 담당교사에게 상황전달 • 상황 전달 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을 안심시키고, 안전한 곳에 위치시키는 등 질서 및 생활지도 수행

❑ 생명 위급상황

최초 발견자가 즉시 119 신고(신고 후 교직원에게 상황전달)

구 분	세 부 내 용
신고상황	• 의식소실 등 환자 상태가 위급 시 119 즉시 신고 • 환자 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지체 없이 119 신고(문의)
전달내용	• 사고 장소, 주요 건물, 사건/사고 종류, 환자 상태, 부상자 수, 응급처치 내용, 다른 질문이 없는 지 확인
주의사항	• 먼저 전화를 종료하지 않음 • 구조대가 출동 후 관련 정보를 다시 물을 수 있으므로, 신고 후 전화를 사용하지 않음

2. 응급조치

❑ 일반 상해발생 상황

상황별 응급처치 시행

-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 상처, 코피, 탈구, 염좌 등 [붙임 #2] 참조

병원 이동(필요 시)

- 교내 응급처치 결과 추가 병원 치료가 필요할 경우 학부모가 피해학생과 함께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연락
- 학부모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사전에 파악된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 또는 학교에서 가까운 병원 등으로 학교실정을 고려하여 지정
- 병원 이동 시 학교실정을 고려하여 담당 교직원을 선정하여 병원 동행
- 병원 이동 시 필요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에게 전화로 간략하고 정확하게 주요 정보 전달
- 병원 이동 중 2차 사고가 우려될 경우 119 구조대 이송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교직원이 이송할 경우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함

구 분	주 의 사 항
1	• 부상자의 몸을 움직일 때와 옮길 때는 가급적 환자의 움직임이 적게 한다.
2	• 이송 완료까지 부상자의 상태를 계속 관찰한다.
3	• 2인 이상이 이송을 할 경우, 반드시 리더를 정하여 이송한다.

❑ 생명 위급상황

2차 피해 우려 확인

- 현장이 위험할 시 피해 학생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
- 척추손상 등 중증 부상자의 경우 무리한 이동 삼가

상황별 응급처치 실시

- 119 구조대 도착 전 생명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가장 먼저 위급상황을 발견한 교직원이 응급처치 실시
- 응급처치 실시 전 의식, 호흡, 맥박 등 확인
- 의식이 없을 시 기본소생술 먼저 시행, 의식이 있을 시 상황별 응급처치 실시
-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 심폐소생술, 호흡기질환, 출혈 등 세부내용은 [붙임 #3] 참조
- 응급처치가 어려울 경우 피해 부위 촬영 사진을 119 구조대에게 공유하여 지시에 따름

병원 이송

- 병원 이송 시 교육시설의장, 학부모에게 간략하고 정확하게 주요 정보 전달
- 학부모에게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학교실정에 따라 병원 이동 시 동행할 담당 교직원 선정

※ 정보 전달방법 : 전화, 문자 등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쳐서, 응급처치 결과 또는 진행 상황 등 전달

3. 상황정리

❑ 일반 상해발생 상황

교내 응급처치

구 분	세 부 내 용
주의사항 안내	• 상황별 응급처치 시행 결과 및 주의사항 안내가 필요할 경우 피해학생과 해당 담임교사에게 안내
응급처치 및 상황기록	• 사고 현황 등은 사고 발생 상황을 관찰했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한 교직원이 작성 • 사고현황 작성방법 : 날짜, 시간, 장소, 사고현황, 피해 학생 상태, 처치내용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상황별 응급처치 결과는 보건일지에 보건교사가 작성 • 보건교사 부재 등 학교실정에 따라 보건일지 작성 담당 교직원 선정

병원 치료

- 아래 생명 위급상황 조치사항 시행(병원 이송 상황 및 경과 전달, 보호자 부재 시 역할 대행)
- 학부모 병원 도착 후 치료경과 안내 후 피해 학생 인계
- 담당 의사가 피해 학생 스스로 귀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피해학생에게 주의사항 안내 후 귀가 조치(학부모 동의 시)

❑ 생명 위급상황

병원 이송 및 치료경과 상황전달

- 병원 이송 상황 및 경과에 대해 교육시설의장 또는 교감, 학부모에게 상황 전달

보호자 부재 시 역할 대행

- 학부모 인계전까지 피해 학생 보호자 역할 대행
  (학부모 외 피해 학생 친척 등 역할 대행자가 있을 경우 피해 학생 인계 후 교직원 학교 복귀 가능)

4. 보고조치

❑ 일반 상해발생 상황

교내 응급처치 : 보건일지 작성

병원 치료

구 분	세 부 내 용
공제회 신고 및 공제급여 신청여부 판단	• 병원 치료를 받았을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도공제회 신고 • 병원 치료결과에 따라 공제급여 신청여부 판단 후 신청

❑ 생명 위급상황

보고기준에 따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상황보고

구 분	세 부 내 용
교육청 (교육부)	• 사망 또는 장해(후유장애)가 예상되는 부상과 3주 이상 입원을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교육청 선 유선보고 후 공제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해 재난집계 시스템으로 사고 통지

붙임 #1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응급증상 및 응급에 준하는 증상

구 분	응급증상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신경계	급성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두부 손상	의식장애,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심혈관계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호흡곤란, 과호흡
외과계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 광범위한 화상(신체 표면적의 18%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대퇴부 척추의 골절, 혈관손상, 다발성외상, 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화상, 급성복통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밖에 응급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 대사장애	
출 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혈관손상 등
안과계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안통, 눈 출혈 등
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피부에 나타난 이상반응
정신과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소아과계	소아 경련성 장애	소아경련, 38℃이상의 소아고열
이물질에 의한 응급증상		귀·눈·코·항문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가 필요한 경우

※ 이외의 심한 치통, 치아손상 등 신속을 요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관련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재구성

붙임 #2 상황별 처치방법

❑ 일반생활 응급처치

코의 상처 (코피, 비출혈)

둔탁한 물건 등에 의해 코에 충격을 받거나 고혈압, 고도의 변화 등에 의해서 발생된다.

처치

1) 머리를 약간 앞으로 숙여 혈액을 삼키거나 기도로 흡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2) 코뼈 바로 아래 부분을 5~10분간 눌러준다.
3) 콧등을 얼음주머니 등으로 대어주거나 코 아래 윗입술 바로 위를 압박한다.
4) 출혈이 멈추었더라도 바로 코를 풀지 않도록 한다.

코피 주의사항

피(비출혈)가 20분 이상 지속되거나, 코뼈가 부러진 것이 의심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입의 상처

입의 상처는 피와 흔들리는 치아로 인해 기도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치료할 때는 환자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응급처치

1) 머리, 목, 척추 부상이 없으면 머리를 전방으로 숙이고 앉아 있게 한다.
2) 머리, 목, 척추 부상이 있으면 회복자세를 취해준다.
3) 입술 관통상 일 경우, 입술과 잇몸 사이에 둥근 드레싱을 대어주며, 입술과 혀에 차가운 것을 대어준다.

치아 빠짐 (유실)

치아가 빠졌을 때, 신속한 지혈과 치아를 재이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응급처치

1) 치아의 유실 시간을 파악한다.
2) 유실된 치아를 입안에 넣어 병원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어린아이의 경우 삼킬 수 있으므로 자제한다.
3) 가장 좋은 방법은 유실된 치아를 우유에 넣어서 보존하는 방법이다. 만약 우유가 없다면 깨끗한 물에 넣어 보존한다.
   - 유실된 치아를 우유에 보존하는 이유
     우유는 구하기 쉽고 멸균이 되어있고 세포가 죽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농도와 영양분을 가지고 있다.
4) 가능한 1시간 이내에 치과 병(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5) 유실된 치아의 뿌리 부분은 절대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치아유실 후 빠른 병원 방문의 중요성

치아가 빠진 후 15분 내에 다시 심었을 때 부작용은 거의 없으며 빠진 치아가 공기 내에서 30분 이상 노출되면 치아를 재이식해도 대부분 뿌리가 흡수되는 부작용이 생긴다. 즉, 치아의 유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느냐에 따라 예후가 달라진다.

귓속의 이물

귓속에 파리 또는 벌레가 들어간 경우 불빛으로 유도해 밖으로 빼낸다. 이물을 바늘이나 철사 같은 것으로 빼낼 경우 귀 손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제한다.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29~130]

❑ 드레싱

드레싱의 용도

감염방지, 출혈방지, 분비물 흡수

드레싱의 종류

1) **거즈** - 작은 상처에 사용되며 크기별로 나뉘어서 멸균 포장되어 있다. 일부 거즈는 특수 코팅이 되어 있어 상처에 달라붙지 않으므로 특히 화상부위나 분비물이 있는 상처에 유용하다.
2) **접착 드레싱** - 혈액이나 액체가 응고 되었을 때 주로 사용한다. 그리고 일회용 밴드처럼 생긴 것은 무균 드레싱과 붕대를 혼합한 형태로 작은 베인 상처나, 긁힌 상처에 유용하다.
3) **외상용 드레싱** - 크기가 크고 두껍고 흡수성이 있는 소재로 소독이 되어 있으며 주로 출혈이 심한 베인 상처나 벗겨진 상처에 유용하다.

드레싱 할 때 주의할 점

1) 솜뭉치나 뭉친 약솜을 드레싱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출혈이 멈출 때까지 젖은 드레싱을 떼지 않는다. 피가 멈추지 않으면 새로운 드레싱을 덧댄다.
3) 상처에 달라붙은 드레싱을 억지로 떼어 내지 않는다. 만일 떼어 내야 한다면 따뜻한 물로 적신 후 조심스럽게 떼어 낸다.

❑ 붕대 용도

붕대의 용도

1) 드레싱이 상처에 붙어 있게 고정
2) 부목의 고정
3) 압박을 통한 지혈
4) 감염 등으로부터 보호
5) 부기(浮氣) 예방

붕대의 종류

1) 탄력 롤 붕대 : 염좌 등 압박 및 고정용으로 사용한다.
2) 사두붕대 : 양 끝을 잘라 귀가 네 개 있는 모양. 돌출된 부위에 유용하다.
3) 삼각건 : 반창고가 없어도 드레싱을 고정시킬 수 있으며,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삼각건 매듭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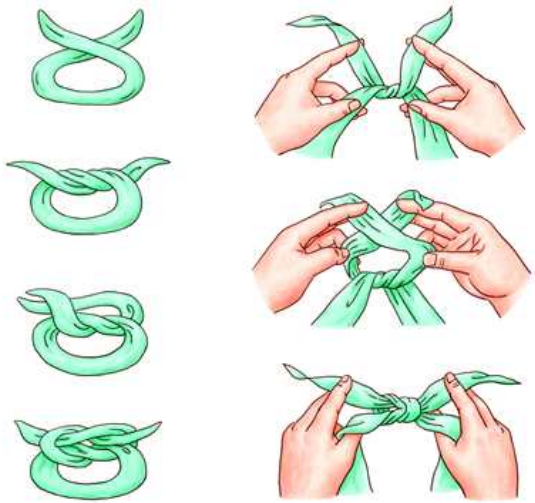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95-96]

삼각건을 사용하여 상처 응급처치하기

머리

머리에 댄 드레싱을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특히 머리에 넓게 상처를 입었을 때 사용한다.

1) 삼각건의 밑변 부위를 폭이 약 5cm 정도 되도록 접는다.
2) 접은 부분의 중심이 이마 중앙의 눈썹 위에 오게 한다.
3) 삼각건의 양끝을 머리 뒤로 돌려 감고 교차하여 다시 앞으로 오게 하여 이마 중앙에서 묶는다.

어깨

어깨나 상완(위팔)에 댄 넓은 드레싱을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두개의 삼각건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중의 한 개는 좁게 접는다.

1) 펴 놓은 삼각건 꼭짓점 부근에 세 번 접은 다른 삼각건을 놓고 밑변이 평행하도록 하여 2~3번 접는다.
2) 넓은 삼각건으로 상처를 덮고 접은 삼각건의 양 끝을 부상당하지 않은 쪽의 겨드랑이 바로 앞에서 묶는다.
3) 부상당한 어깨 쪽 삼간건의 양끝을 겨드랑이 밑으로 돌렸다가 다시 상완부에 돌려서 단단히 묶는다.

팔꿈치

팔꿈치의 상처에 댄 드레싱을 고정시키고 팔꿈치의 운동도 가능케 한다. 팔꿈치를 ㄱ자로 구부린 자세로 삼각건을 감는다.

1) 삼각건의 넓이를 7~10cm로 만든 후 드레싱 위를 중심으로 놓고 감기 시작한다.
2) 한번 돌려 감은 후, 한 쪽은 팔꿈치 위쪽으로 돌려 감아 주고 다른 한 쪽은 아래쪽으로 돌려 감아준다.
3) 삼각건의 양 쪽 끝이 팔꿈치 관절의 바깥쪽에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만나게 한 후 묶어준다.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92]

❑ 탈구

정의

뼈가 정상위치를 이탈했거나 분리된 상태를 말한다.

증상

심한 통증을 유발하며, 관절의 모양이 변하고 붓는다.

응급처치

1) 비상시가 아니면 비의료인이 탈구를 바로 잡으려 하면 안 된다.
2) 부상부위를 편하게 하고, 냉찜질을 하여 통증과 부기(浮氣)를 가라앉힌다.
3) 쇼크에 대한 응급처치를 병행한다.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00~102]

❑ 염좌

정의

인대 등 관절조직이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파열된 상태를 말한다.

원인

관절을 형성하는 뼈가 정상운동 범위를 심하게 벗어날 경우 주로 발생한다.

증상

1) 손상과 동시에 부어오르기 시작하며 통증을 유발한다. 부상부위를 움직일 경우 통증이 심해진다.
2) 부상부위의 피부색이 곧바로 변하지는 않지만, 변색될 경우 장기간 지속된다.

응급처치

1) 부상부위가 손목일 경우 팔걸이를 하여 고정시키고, 발목일 경우 환자를 눕히고 부목, 삼각건 등을 활용하여 고정시킨 후 부상부위를 높여준다.
2) 전문기관의 치료를 받기 전까지 상처 부위를 차갑게 해주는 것이 좋다.
3) 염좌가 심하다면 의료인이 도착할 때까지 가급적 움직이지 않는다.
4) 발목 염좌가 있는데 혼자 걸어야 한다면, 신발을 신은 채로 신바닥 굽 바로 앞에 접은 붕대의 중간 을 대고(신발은 벗은 상태라면 발등위에 접은 붕대의 중간을 대고 발바닥을 한 번 감은 뒤) 양끝을 발뒤꿈치 위(뒤)에서 교차시킨 후 다시 발목 앞으로 돌려 교차시켜 양끝을 발뒤꿈치의 양쪽을 지나간 붕대 밑으로 넣어 걸어서 다시 발등에서 묶는다.

5) 발목 염좌는 되도록 걷지 말고 신속하게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00~102]

❑ 근육염좌

정의

근육이나 건 섬유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거나 찢어진 것

원인

근육을 심하게 사용하거나 갑작스런 움직임이 있을 때 발생

증상

관절사이의 통증, 부종, 기형이 발생한다.

응급처치

염좌의 처치내용과 같이 부상부위를 안정시키고, 냉찜질을 한다.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00~102]

❑ 근골격의 손상 시 일반적인 응급처치

뼈의 골절이 의심되는 때의 응급처치

1) 골절이 의심되거나 골절된 환자는 가능한 한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2) 환자를 함부로 옮기거나, 다친 곳을 건드려 부러진 뼈끝으로 골절을 악화시키게 해서는 안된다.
3) 굽은 곳을 바로 펴려고 하지 말고, 밖으로 돌출된 뼈를 안으로 밀어 넣어서는 안된다.
4) 골절이나 탈구 가능성이 있거나 의심이 되는 곳은 전부 부목을 댄 후 즉시 병원으로 후송한다.
5) 출혈이 심하면 지혈을 한 후 부목으로 고정하여 병원으로 후송한다.

탈구(관절이 빠졌을 때) 시 응급처치

베게나 쿠션을 사용 부상자를 가장 편한 자세로 유지해 주고 즉시 병원으로 후송한다.

염좌(근막 또는 인대 손상 등) 시 응급처치

1) 관절 주위의 인대나 조직의 손상으로 흔히 '삐었다' 고 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2) 부상자가 가장 편한 자세로 관절을 지탱해 주고 손상된 부분을 높게 해준다.
3) 찬 얼음으로 부은 것과 통증을 감소시켜 주면 효과적이다.
4) 골절과 같은 처치로 부목을 대준다.

부목사용의 목적

1) 부러진 뼈를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 폐쇄골절이 개방골절로 되는 것을 예방한다.
2) 신경, 근육과 혈관 손상을 최소화한다. 즉, 부러진 뼈끝이 주위 조직을 건드려 출혈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한다.
3) 동통을 경감한다.

발목 발등골절	염좌	하퇴골(정강이와종아리)골절

RICE(Rest-Icing-Compression-Elevation)

휴식(Rest)
1) 통증이 유발되는 움직임과 운동은 피하게 하고, 환자가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게 해준다.
2) 머리, 목 손상 의심 시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힌다.

얼음찜질(Icing)
1) 손상부위에 거즈나 의복을 대어 피부손상을 예방한 후 얼음 등을 이용해 차갑게 해준다. 얼음찜질은 부기(浮氣)와 통증, 불편함을 감소시킨다.
2) 얼음은 별도의 얼음주머니를 활용하거나 없을 경우 수건이나 옷에 싼 후 이용한다. 단, 개방성 골절에는 얼음찜질을 하지 않는다.
3) 손상부위에 10분간 냉찜질을 한 후 손상부위를 확인했을 때 심하게 차갑다고 느낀다거나 빨갛게 된다면 냉찜질을 중단한다.

압박(고정)(Compression)
1) 근골격계 손상이 의심되면 얼음찜질을 하거나 높여 주기 전에 부목 등으로 손상부위를 고정한다.
2) 압박(고정)의 목적
   - 통증 감소
   - 주변의 연한 신체조직 손상방지
   - 심각한 출혈의 위험성 감소
   - 손상 부위의 혈액순환 개선
   - 폐쇄성 골절이 개방성 골절로 악화될 가능성 예방

올리기(손상 부위 높임)(Elevation)
1) 손상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여 혈류량을 감소시켜 부기(浮氣)를 줄여준다.
2) 골절이 의심되는 부위는 부목을 대고 높여 준다.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00~102]

손상부위에 부목을 사용 시 고려할 점

1) 가능한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손상부위를 지지하면서 부착한다.
2) 개방골절은 출혈, 감염방지를 위해 골절부위를 지지하고 붕대를 감아준다.
3) 단단한 부목사용 시 부드러운 천 등을 감싸주면 좋다.
4) 부목사용 시 부목과 신체 사이의 빈 공간에 고임(삼각건, 천 등을 활용)을 넣어 주는 것이 좋다.
5) 부목은 삼각건, 붕대, 옷 등을 이용해 잘 고정한다.
6) 손가락, 발가락 끝을 자주 확인하여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확인하며, 부목을 댄 아래쪽이 저린다거나, 손·발가락의 피부색이 변할 경우 부목을 잠시 풀어준다. (30분마다 한 번씩 혈액순환 확인)
7) 가능하면 부목을 댄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고 충격처치를 병행한다.

❑ 화상

화상의 정의

과도한 열, 화학물질, 전기, 태양열, 방사능 등에 의해 피부조직에 손상이 유발되는 것 → 화상으로 피부가 벗겨지게 되면 감염이 유발될 수도 있고, 신체로부터 나오는 체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체의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이 손상될 수도 있다.

화상의 원인(연령별)

1) 3세 이하의 소아 - 가정에서 끓는 물
2) 3~14세 - 불장난 등으로 인한 화염 또는 그을림
3) 15세 이상 - 작업상의 사고

화상 응급처치

화상처치의 4가지 기본단계

1) 화상부위를 냉각시킨다.
2) 감염예방을 위해 화상부위에 드레싱을 해준다.
3) 쇼크 응급처치를 병행해 준다.
4) 의료적 도움의 필요 여부를 최대한 빨리 결정해야 한다.

학교에서의 화상 상황

1) 핫팩 : 저온 화상
2) 주전자(포트) : 컵이나 종이컵에 물을 붓다가 화상
3) 컵라면 : 컵라면에 물을 붓다가 화상을 입거나 컵라면 용기를 들고 이동 중 물을 쏟아 화상을 입음

화상의 종류와 증상

1도 화상 (표재성/홍반성 화상, Superficial Burns)	• 피부의 외피층만 손상된 것으로 대부분 일광에 의해 발생한다 • 증상 : 피부가 빨갛게 되고, 따끔거리는 통증이 있다 • 치료하면 대부분 특별한 흉터 없이 5~6일 안에 완치된다
2도 화상 (부분층/수포성 화상, Partial-Thickness Burns)	• 피부의 외피와 표피, 진피까지 손상된 화상이다 • 증상 : 물집, 심한 통증, 흉터나 피부변색(붉어짐), 탈모 등이 생긴다 • 치료해도 흉터가 생길 수 있으며, 보통 3~4주 안에 완치된다
3도 화상 (전층/괴사성 화상, Full-Thickness Burns)	• 피부의 전층, 피하지방, 근육, 뼈, 혈관, 신경 등 하층 구조까지 손상된 화상 • 증상 : 상처부위가 갈색 또는 거무스름하고, 아래에 있는 조직은 새하얗게 되고, 통증이 심하거나 신경의 끝부분이 파괴되어 통증이 없을 수 있다 • 치료해도 대부분 흉터가 남으며, 광범위한 3도 화상은 사망할 수도 있다

화상 발생 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1) 된장, 간장, 기름, 약 등을 바르지 말 것(세균 감염 우려)
2) 물집을 터트리지 말 것(세균 감염 우려)
3) 눈 화상 경우 문지르지 말 것(각막 손상으로 실명 우려)
4) 떨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떼어내지 말 것(피부손상, 세균 감염)
5) 피부가 부어오르기 전 시계, 반지 등 귀금속 제거할 것

출처: 응급처치법(대한적십자사)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11~112]

❑ 열성질환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일사병)
정의	• 고온에서 과도한 활동 후 체내 수분과 염분 소실로 일어나는 질환	• 땀을 과다하게 흘려 체내 수분이 떨어짐과 동시에 피부로 가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질환	• 고온의 태양열 등에 의해 뇌의 체온중추기능이 마비되어 일어나는 질환
원인	• 고온의 환경에서 강도 높은 운동과 노동을 할 때	•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는 경우	•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는 경우
증상	• 근육 경련 (다리와 복부에 많음) • 따뜻하고 습한 피부 • 체온은 정상이거나 약간 높음 • 많은 양의 땀 분비	•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 차갑고 축축하며 창백한 피부 • 체온은 정상 • 빠르고 약한 맥박 • 심한 발한	• 체온상승 • 건조하고 따뜻한 피부 • 의식을 점차 잃음 • 초기에는 강하고 빠른 맥박, 점차 느리고 약해짐 • 초기의 깊은 호흡에서 점차 얕은 호흡
응급처치	•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함 • 진하지 않은 소금물, 스포츠 음료를 줌 • 경련이 일어난 부위를 마사지 함	•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함 • 옷을 느슨히 함 • 젖은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냄 • 의식이 있으면 시원한 물을 섭취 • 눕힌 상태에서 다리를 높여줌	•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함 • 옷을 느슨히 함 • 젖은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냄 • 가능한 빨리 의사의 치료를 받음 • 환자의 머리, 어깨를 약간 높임

열경련(Heat Cramps)

정의
고온상태에서 과도한 신체활동 후 체내 수분, 염분의 손실에 의해 근경련이 유발되는 상태
원인
심한 발한으로 인해 급격하게 신체 내 수분과 염분을 잃을 경우 발생된다.
증상
다리와 복부에 통증을 동반한 근수축, 체온은 정상, 축축한 피부
응급처치
시원한 장소에서 시원한 물 또는 스포츠 음료를 주면서 휴식을 취하게 하고, 수축된 근육을 마사지한다.

열탈진(Heat Exhaustion), 열성피로(Heat Fatigue)

정의
고온상태에서 체내 수분과 염분의 과도한 손실로 혈류량이 감소되고, 이로 인한 임상증상이 유발되는 것을 말한다.
원인 및 특징
극심한 고온에서 장시간 운동을 하거나 심한 노동으로 수분 손실이 진행되어 혈류량이 감소하지만 피부나 말초로 가는 혈류는 증가하며 생존에 필요한 장기로 가는 혈류는 감소한다.
증상
낮거나 정상적인 체온, 차고 축축하며 창백한 피부, 두통, 탈진, 메스꺼움, 현기증과 허약/무력감, 빠르고 약한 맥박 등
응급처치
1) 시원한 장소로 환자를 옮긴다
2) 옷을 느슨하게 해준다
3) 젖은 수건으로 열을 증발시킨다
4) 의식이 있으면 적은 양의 시원한 음료를 준다

열사병(Heat Stroke)

정의
고온에 의해 체온조절 중추의 기능이 마비되어 주요장기 손상이 유발되는 것을 말한다.
원인 및 특징
고온에 의한 체온조절 중추기능의 마비
증상
높은 체온, 붉고 건조한 피부, 의식 소실, 약하고 빠른 맥박, 얕고 빠른 호흡 등
응급처치
119에 도움을 요청하며, 그 외의 처치법은 열탈진의 처치와 동일하다.

❑ 동상 및 저체온증

동상의 정의

신체의 일부가 언 상태를 말한다.

동상의 원인

추위에 신체부위가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며 기온, 노출시간, 바람 등이 주요 유발요인이다.

동상의 종류

1) 표재성 동상 : 피부는 손상 되었으나 피부 아래 깊은 조직에는 영향이 없는 상태다.
1) 심부 동상 : 피부와 피부 아래 깊은 조직까지 침범한 동상이며 심하면 신체부위를 잃을 수 있다.

동상의 증상

동상 부위의 감각 소실, 끈적끈적하고 차가운 피부, 변색된 피부색

동상 응급처치법

1) 동상 부위를 따뜻하게 한다는 이유로 문지르지 않는다.
2) 동상 부위를 37~40도 정도의 물에 피부색이 정상이 될 때까지 담근다. 온도계가 없는 경우 손을 넣어 따뜻하다고 느낄 정도의 물이면 된다.
3) 동상 부위는 건조한 무균 붕대로 감고, 손·발가락 사이사이에는 멸균된 솜이나 거즈를 넣고 감는다.
4) 물집은 터뜨리지 않고, 신속하게 전문의의 치료를 받도록 한다.

❑ 벌에 쏘였을 때

정의

벌의 몸통 부분에 있는 침에 의해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에 보고되는 중독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원인

벌통을 건드린 경우, 요란한 색의 옷을 착용한 경우 등이 있다.

증상

보통은 쏘인 자리가 아프고 붓는 정도지만 벌독에 의한 알레르기가 있으면 피부 두드러기, 저혈압, 의식불명, 천식발작, 호흡곤란, 복통 등이 나타나며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벌독 알르레기를 유발하는 벌

꿀벌, 말벌, 땅벌 등

벌에 쏘인 경우 응급처치

핀셋을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밀어서 제거하며, 벌침 제거 후 냉찜질을 한다. (벌침을 제거할 때에는 독낭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벌독 알레르기 환자의 경우

호흡곤란과 의식장애 발생 시 누운 자세를 유지하면서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충분히 확보한 자세로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벌에 쏘이지 않으려면

1) 벌을 유인할 만한 향수, 화장품, 요란한 색의 옷을 피한다.
2) 벌이 가까이 접근하면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낮은 자세를 취한다.
3) 옥외에선 언제나 양말, 운동화를 착용하고, 몸에 맞는 옷을 입지만 원색의 옷은 피한다.

- 독충에 물렸을 때 가장 위험한 경우를 말하며 독충에 의한 사망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 전신적인 과민반응 - 두통, 어지럼증, 구토, 복통, 호흡곤란, 경련, 의식저하 등의 쇼크증상이 나타나면 매우 위험하다.
- 과민성 쇼크의 경우 - 급속히 진행되며 1~2시간 이내에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자의 60~80%는 기도가 부어 질식하는 것으로 보고됨.
- 응급처치 - 쇼크 응급처치를 실시하되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 예방 - 평소에 알레르기나 특정물질에 과민반응이 있으면 주변에 알린다.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27~128]

붙임 #3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 심폐소생술

1. 현장 안전과 반응 확인

환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구조자는 현장 상황이 안전한지, 감염의 가능성은 없는지를 우선 확인한다.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환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본다. 의식이 있다면 환자는 대답하거나 움직이거나 신음을 내는 것과 같은 반응을 나타낸다. 확인하는 동안에 쓰러져 있는 환자의 머리나 목의 외상이 의심되면 손상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한다.

이때 환자의 반응이 없으면 119에 신고한다. 반응이 있고 진료가 필요한 상태이면 119에 연락을 한 다음 환자의 상태를 자주 확인하면서 구급상황(상담)요원의 지시를 따른다.

[출처: 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요약본]

2. 응급의료체계 신고

반응이 없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쓰러진 사람이 심장정지 상태라고 판단하고 즉시 119에 신고(혹은 원내 심장정지 코드 방송)하고 자동제세동기를 요청한다. 심장정지 환자를 목격한 경우에는 주변에 큰 소리로 구조를 요청하고 다른 사람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도움을 요청한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직접 119에 신고한다.

3. 호흡 확인

호흡은 119 신고를 먼저 한 이후에 환자의 호흡을 확인해야 한다. 호흡 확인 과정은 매우 어려우며, 특히 심장정지 호흡이 있는 경우 심장정지 상황에 대한 인지가 늦어져 가슴압박의 시작이 지연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반인은 반응을 확인한 후 반응이 없으면 119에 신고하고 자동제세동기를 요청한 후 구급상황(상담)요원의 안내에 따라 호흡의 여부 및 비정상 여부를 판별해야 하며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가슴압박을 시작한다.

[출처: 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요약본]

4. 가슴압박

가슴압박은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 정중앙(복장뼈의 아래쪽 1/2)에 한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올려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올려서 겹친 뒤 깍지를 낀 자세로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성인 심장정지의 경우 압박 깊이는 약 5cm, 가슴압박의 속도는 분당 100회~120회를 유지한다.

또한, 가슴압박 이후 다음 가슴압박을 위한 혈류가 심장으로 충분히 채워지도록 각각의 가슴압박 이후 가슴의 이완을 최대로 할 것을 제안한다. 가슴압박이 최대한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가슴압박이 중단되는 기간과 빈도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성인 심장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2로 시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심폐소생술 시작 1.5~3분 사이부터 가슴압박의 깊이가 얕아지므로 2분마다 가슴압박을 교대해 주는 것이 구조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을 제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성인 가슴 압박법]

[소아 가슴 압박법]

[출처: 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요약본]

5. 기도유지 및 인공호흡

1) 기도유지 방법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자신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구조자는 머리기울임-턱들어올리기(head tilt-chin lift) 방법을 사용하여 기도를 개방한다. 이 방법은 한 손을 심장정지 환자의 이마에 대고 손바닥으로 압력을 가하여 환자의 머리가 뒤로 기울어지게 하면서, 다른 손의 손가락으로 아래턱의 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당겨 턱을 받쳐주어 머리를 뒤로 기울이는 것이다. 이때 턱 아래 부위의 연부조직을 깊게 누르면 오히려 기도를 막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기도가 열리면 환자의 입을 열어 입-입 호흡을 준비한다.

2) 인공호흡 방법

인공호흡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1초에 걸쳐 인공호흡을 한다.

② 가슴 상승이 눈으로 확인될 정도의 일회 호흡량으로 호흡한다.

③ 가슴압박 동안에 인공호흡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인공호흡을 과도하게 하여 과환기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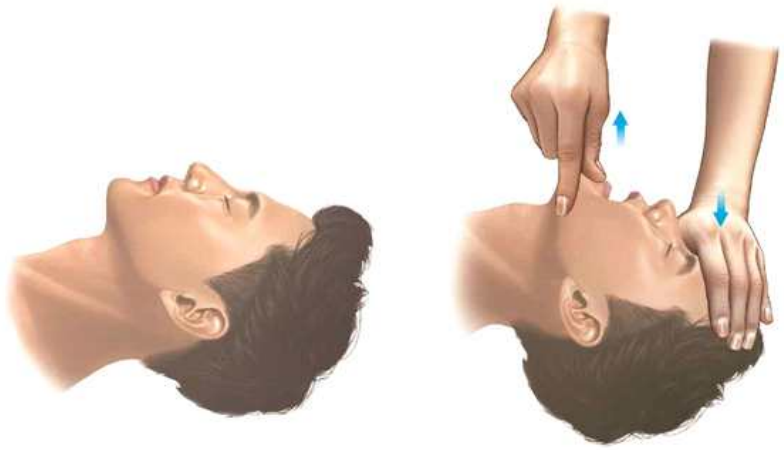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요약본]

❑ 자동제세동기

[출처: 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요약본]

❑ 기도폐쇄(하임리히법)

순서	처치 방법
1	환자에게 “목에 뭐가 걸렸나요?”라고 묻고, 말을 하지 못한다면 기도 폐쇄이므로 즉각 처치 시행
2	환자가 기침을 크게 한다면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하지만, **스스로 기침을 못하는 성인이나 1세 이상의 소아 환자**라면 **즉시 등 두드리기 시행**
3	등 두드리기 5회 연속 시행 후 효과가 없다면 5회의 복부 밀어내기(하임리히 법) 시행
4	기도폐쇄 징후가 해소되거나 환자가 의식을 잃기 전까지 계속 등 두드리기와 복부 밀어내기 5회씩 반복

등 두드리기 복부 밀어내기

[출처: 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2020),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요약본]

❑ 골절

골절의 형태별 분류

1) 분쇄골절 - 골격이 손상되어 두 개 이상의 골절 파편으로 나누어진 경우
(자동차 사고 등에 많음)
2) 나선골절 - 골절이 뼈 둘레를 돌면서 골절된 형태(스키사고 등에 많음)
3) 사선골절 - 뼈의 축에서 사선으로 골절된 형태
(뼈에 약간 또는 중간 정도의 압력이 가해진 경우)

골절의 원인별 분류

1) 외상성 골절 - 일반적인 골절, 정상적인 뼈가 외력으로 인해 발생
2) 특발성 골절 - 질병으로 인해 변화된 특정부위의 뼈가 약해져 외력 없이도 근수축에 의해 이상골절이 발생된 상태. 병적 골절이라고도 함
3) 피로성 골절 - 일정 외력이 장기간 반복되어 뼈에 누적되면 피로현상으로 변질되는 현상

신체 부위별 골절처치

1) 빗장뼈(쇄골) 골절

증상

- 일반적인 골절 증상이 나타난다.
- 대부분 부러진 부분이 만져진다.
- 팔을 어깨위로 들지 못한다.
- 부상당한 어깨가 반대편보다 처진다.

응급처치

- 부상당한 쪽의 손을 팔꿈치 보다 높게 하여 반대쪽 어깨에 되고 삼각건을 댄다.

2) 위팔뼈(상완골) 골절

증상

- 골절의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 어깨관절의 운동을 할 수 없다.

응급처치

- 팔꿈치를 'ㄴ자'로 구부린 후 어깨부터 팔꿈치 길이의 부목을 댄다.
- 삼각건을 부러진 뼈 위쪽과 아래쪽에 하나씩 묶는다.
- 삼각건으로 팔걸이를 만든다.
- 삼각건으로 팔 전체를 고정한다.
- 부목이 없을 시 붕대로 팔 전체를 가슴에 대고 감는다.

3) 팔꿈치뼈(주관절) 골절

증상

- 관절부위가 붓고 팔을 구부릴 수 없다.

응급처치

- 겨드랑이부터 손가락까지 부목을 댄다.
- 팔꿈치가 구부러져 있으면 팔을 무리하지 않게 끌어올리고 팔을 몸체에 대고 삼각건을 고정시킨다. 팔과 몸을 고정할 때는 골절부위를 건드리거나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 구부러진 팔을 무리하게 펴지 않는다.
- 이송 시 삼각건으로 허리를 묶어 고정한다.

4) 아래팔뼈(전완골) 골절

증상

- 아래팔 뼈 두 개가 모두 부러질 경우 골절의 일반적 증상이 나타난다.

(아래팔 뼈 전완의 뼈 한 개 또는 두 개가 부러질 수 있다)

- 한 개만 부러졌거나 손목 뼈마디가 부러졌을 때는 부상 부위를 움직이기 어렵다.

응급처치

- 편안한 자세로 안정을 취하게 한다.
- 팔꿈치부터 손가락까지 길이의 부목을 손바닥 쪽에 댄다.
- 두 개의 삼각건을 골절부위 위쪽부터 맨다.
- 손바닥이 가슴 쪽을 향하도록 하고, 팔꿈치 보다 약 10cm정도 높게 한 후 삼각건으로 고정시킨다.

쇄골(빗장뼈) 골절	주관절(팔꿈치골절)	전박골(아래팔뼈골절)

출처: 응급처치법(대한적십자사)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06~108]

❑ 전기화상

특징

1) 화상의 크기가 작아도 신체 내부의 심한 손상이 동반되며, 특히 심장은 전기에너지에 의해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다.
2) 전기가 신체에 접촉하면 전기가 신체내부로 유입되고 다른 부위로 나오게 되는데 전기가 들어가고 나온 곳에 화상을 입고 전기가 나오는 곳의 상처가 깊고 크다.

전기에 의한 화상 응급처치 방법

1) 구조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현장의 모든 전원을 차단 후, 접근해야 한다.
2) 필요시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사용, 쇼크, 화상, 골절 처치 등을 실시한다.
3) 처치 - 119를 통해 화상전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전문치료를 받도록 한다.

❑ 저체온증

저체온증의 정의

내·외부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저체온증의 원인

찬물 속에 오래 있거나 젖은 의복을 장시간 입고 있을 때, 난방시설이 없는 곳에 장시간 체류 등 장시간 낮은 온도에 노출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저체온증의 증상

1)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진다.
2) 체온이 떨어지면서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박동하며 심하면 심장마비로 사망한다.
3) 온몸을 떤다.(증상이 진행됨에 따라 떨림은 없어진다.)
4) 몸이 저리다.
5)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한다.
6) 무감각해지고 의식상태가 희미해진다.

저체온증의 응급처치법

1) 신속히 환자상태를 파악하여 치명적인 상태(호흡정지, 심장마비) 유무를 확인한다.
2) 필요 시 119에 도움을 요청한다.
3) 젖은 의복은 벗기고 환자의 몸을 건조하게 유지한다.
4) 따뜻한 장소로 옮겨 몸을 따뜻하게 한다. 단, 갑자기 체온을 높이지 않는다.
5) 저체온증 환자가 의식이 잃을 경우 필요 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구조대원을 기다린다.

저체온증의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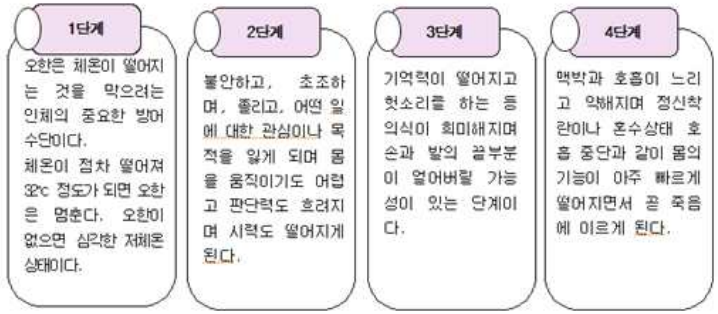

저체온증의 온도별 변화

저체온증 환자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갑작스럽게 체온을 변화시켜 환자의 떨림 증상을 억지로 중지시키려 하지 않는다
- 32℃ 이하의 저체온 환자에게 뜨거운 물병이나 핫팩 등으로 급속 가온치료를 하지 않는다. 급속가온은 말초의 차가운 혈액을 순환시켜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다.

[출처: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6),
한국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사용(고등학교)_7.응급처치, p.120~122]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4. 20.>

학교안전사고 발생 신고서

일반사항	학교명						
	사건번호				보고일자		
	사고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년반	사고자구분
	지도교사		작성자	성명		연락처	
사고관련자	성명						
	학년반						
	사고관련자 구분						
사고내용	사고일자			사고부위			
	사고시간			사고당시활동			
	사고장소			사고의도성			
	사고형태						
	사고매개물						
사고개요							
지도 내용 및 안전교육 내용							
사고발생 후 긴급 조치 내용							
그 밖의 사항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신명의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참고3] 202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학교안전공제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중증 상해 발생으로 치료 중 간병 필요 시 **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급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공제 대상 확대)** 대학의 안전사고 **보험 선택권 확대**와 대학생 안전사고 **피해보상 강화**를 위해 학교안전공제 **가입 대상**에 **대학이 추가**되도록 규정한다.

※ (현행) 학교안전법에 따라 유·초·중·고등학교만 안전공제 가입 가능

○ **(치료 중 간병료 지급)** 학교안전사고로 중증 상해가 발생하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치료 후**뿐만 아니라, **치료 중**에도 **간병료와 부대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 (현행) 학교안전법에 따라 치료 완료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 가능

○ **(공제급여 지급제한 상향 입법)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시행령에 규정된 **공제급여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규정한다.

* **[대법원 판결내용]** 학교안전법시행령 제19조의2 공제급여의 지급제한 규정(기왕증, 과실상계)은 법률의 위임 없이 피공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

❑ **동 개정으로 인해**

○ 대학생 안전사고 **피해보상 확대**, 피해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으로 **학생·학부모**가 **학업**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두터운 사회안전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①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요양급여) ①·② (생 략)	제36조(요양급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인공팔다리·틀니, 안경·보청기 등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처방 및 구입	<삭 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
<신 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신 설>	2. 인공팔다리·틀니, 안경·보청기 등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처방 및 구입 비용
<신 설>	3. 요양 중인 피공제자의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간병료
<신 설>	⑤ 피공제자의 보호자등이 제4항제3호에 따른 간병을 하는 경우에는 제4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를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제5항---------- 요양급여 및 부대경비----------
제43조(공제급여의 제한) ① (생 략)	제43조(공제급여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공제회는 제35조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현 행	개 정 안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③ 공제회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급여 지급제한 대상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급에 관한 특례) 제36조제4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의 간병에 따른 간병료 및 부대경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참고4] 학교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개별 법령의 규정 _행정실

구분	관계법령	주요내용
건축	건축법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공사 설계도서 건축사 작성(제23조) ◦건축허가 대상 공사의 건축사 감리 지정여부(동법 시행령 제19조) ◦철거예정 7일전 시장군수 구청장 신고(제36조) ◦건축물 철거 후 멸실 신고(제36조)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철거의 경우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제거 및 결과의 기록 보관 (제36조)
전기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7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정기점검* 실시(제65조) *매월 1회 이상, 용량별로 월 3회 이상
도시가스	도시가스 사업법	◦안전관리자 선임(제29조) ◦도시가스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제30조) ◦점검기관(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연 1회 이상 정기검사(제17조)
승강기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승강기관리교육*(제16조) *승강기안전관리자가 지정 3개월 이내 교육이수 ◦월1회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기록부 보관(제17조) ◦연1회 이상 정기검사 및 정기정밀점검*(제13조) *설치 후 15년 이상된 승강기 및 중대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된 승강기 대상
수도시설	수도법	◦수도시설에 절수설비 설치(제15조) ◦저수조 청소*실시, 위생상태 점검** 기록보관 및 수질검사***(제33조) *반기1회 이상, **월1회 이상, ***연1회 이상 ◦수도관리자 교육(제36조) ※ 1년내 8시간의 집합교육 및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교육
하수도시설	하수도법	◦정화조 내부청소* 연1회 이상 실시(제33조) *침전찌꺼기와 부유물질 등 제거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 최단거리 이동편의시설 설치(제3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정(제17조) ◦장애인 접근로 적정 설치(동법 시행령 제4조) - 주출입구에 휠체어 통행용이 및 출입문 시설 - 장애인 복도 통행에 지장 없는 관리 - 장애인용 계단 또는 승강설비 적정 설치 - 장애인용 대.소변기 설치 - 점자블럭,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구비
소방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리(법 제10조) ※ 시설폐쇄, 훼손여부 및 주위 장애 사항 등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규정 제5조) ◦자위소방대 편성.운영(규정 제12조) ◦소방안전교육과 훈련 실시(규정 제14조) ※ 연2회 이상 실시 중 1회는 소방서와 합동 훈련 ◦자체점검계획 수립 및 자체점검(월1회 이상), 기록보관(규정 제15조) ◦소방종합정밀점검(연1회 이상) - 소방서장 보고(법 제19조) ◦각실 책임자의 화기단속 및 예방 조치(규정 제9조)
석면	석면안전 관리법	◦학교시설 석면조사 실시 및 결과 보관(제21조) ◦석면조사결과 보고 - 교육감(제22조) ◦석면안전관리자 지정 보고 - 교육감(제23조) ◦석면안전관리자 안전관리 교육(제24조)

구분	관계법령	주요내용
		※ 관리자 신고 후 1년이내 6시간 이상
급식시설	학교급식법 시행령	◦ 안전한 조리기기, 냉장.냉동시설, 세척.소독시설 구비(제7조) ◦ 급식관리실에 필요한 사무장비 구비(제7조) ◦ 조리종사원 숫자에 맞는 휴게시설 구비(제7조) ◦ 급식시설 설치 시 기준*에 따라 시설설비 구비(시행규칙 제3조) *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시설설비 기준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 안전검사기관 정기시설검사(2년 1회 이상) 결과 표시(제12조) ◦ 자체안전점검 월1회 이상 실시(제15조) ◦ 3년간 안전진단실시결과 기록보관(제17조) ◦ 놀이시설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실시(제20조) ※ 2년 1회 이상, 1회 안전교육 4시간 이상 ◦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가입(제21조) ◦ 어린이 놀이시설 사용금지의 경우 관리감독기관에 통보(제16조) ◦ 어린이 놀이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적합(제11조)
외부인 출입	초중등교육법	◦ 외부인 출입, 학교폭력예방 학생안전대책 수립(제30조)
학교보건	학교보건법	◦ 보건실 66㎡이상 확보 및 세부기준 적합여부(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학생안전교육, 학교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조치(제12조) ◦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제4조) ◦ 학교 환경위생담당자 지정.관리(규칙 제3조) - 교내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 관리 -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 -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 -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 관리
공사발주	산업안전보건법	◦ 공사 발주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제30조) ◦ 석면 해체 시 등록업체(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 해체.제거(제38조)
시설사업 촉진	시설사업 촉진법	◦ 학교신설, 학교용지 변경시 교육청에 사업시행계획 승인(제4조) ◦ 학교용지 내 시설물 증축, 대수선의 경우 교육청 건축승인(제5조) ◦ 시설사업 종료 후 7일 이내 교육청 신고 및 건축물 사용승인(제18조)
폐기물 관리	폐기물관리법	◦ 생활폐기물의 종류, 성질, 상태별 분리보관(제15조) ◦ 사업장 폐기물의 전문업체 위탁 처리 여부(제15조)
하수도	하수도법	◦ 학교 내 하수 및 배수관 신설의 경우 공공하수도 유입(제27조) - 교내 오수 배출 건물 증축 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제34조) *정화조 등의 시설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제37조) -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준*의 의한 설치(제24조) *하수처리구역안 정화조설치, 하수처리 구역 밖 1일 오수처리량 2㎥이상 오수처리 장치 연결, 그 이하 정화조 설치

[참고5]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관리 _행정실

○ 학교안전법 제7조는 교육부장관이 통보한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시설물을 점검토록 하고 있으며, 학교장은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표9-153>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①교육부장관은 학교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작성하여 이를 교육감 및 학교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소관 학교시설 등을 설치·유지 또는 관리하는데 있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학교장은 제1항의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점검 결과를 점검 후 2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학교장의 보고를 기초로 개선이 필요한 학교안전시설에 대하여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4.>

○ 점검 대상 : 유·초·중·고등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 점검 내용 :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6개 분야 26개 항목

<표9-154>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개관

분야	안전기준 항목
건축물	건축물 주변, 교실바닥, 교실벽, 교실문, 교실 창호, 특별교실, 복도, 계단, 화장실, 그 밖의 사항
전기시설	수변전설비, 분전반, 전기배선, 조명설비, 전열설비
설비시설	냉난방설비, 환기시설, 급배수설비 등
소방시설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옥내소화전설비 등, 피난설비
가스시설	저장시설, 배관, 가스 기기
실험실습시설	실험실습 설비 및 비품, 약품보관설비
6개 분야	**26개 항목**

○ 점검 절차 및 방법
-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한 집계표를 지역교육지원청에 제출
- 지역교육지원청은 학교에서 제출된 집계표의 소요예산 등 적정성을 검토한 후 시도교육청에 집계표를 취합하여 제출
- 시도교육청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제출된 점검결과 보고에 기초하여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시행

○ 점검결과 조치계획
- 점검결과 안전기준 미흡시설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기준에 적합조치토록 노력하며,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교육환경개선사업계획에 반영